

국·내·입·법·의·견·조·사

제 13 호

물류관리사제도의 도입

1993. 12.

한국법제연구원

『국내입법의견조사』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입법의견과 향후 예측가능한 입법수요를 조사·분석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생활과 국가의 입법정책 및 입법과정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한 법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정기간행물입니다.

일반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입법의견을 빠짐없이 수집·검토하는 것은 본 조사연구의 목적과도 직결됩니다. 보다 완전한 입법의견조사연구를 위해서는 일반국민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이 필요합니다.

이 조사와 관련하여 의견과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희 연구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110-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화번호 (02) 722-0162·5

연구책임자

수석연구원 이준우
선임연구원 최성근
연구원 배송희

목 차

제 1 편 물류관리사제도의 도입

I. 문제의 소재	5
1. 물류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5
2. 물류관리사제도의 현황	6
3. 입법상의 쟁점사항	8
II. 각계의 의견	9
1. 쟁점사항별 각계의 의견	9
2. 정리 및 평가	15
III. 현행법, 입법안 및 외국의 입법례	17
1. 현행법	17
2. 입법안	21
3. 외국의 입법례	23
IV. 입법방향	25
부 록	29
1. '92년도 제조업체 물류비용 분석	29
2. 교통부 '93년도 추진계획관련 보고내용	29
3. 유사 자격제도의 현황 - 판매사, 경영·기술지도사	30

제 2 편 최근입법의견 동향 및 최신법령 소개

I. 최근입법의견 동향	37
1. 최근입법의견 목록	38
2. 최근입법의견 요지	43
II. 최신법령 목록	107

제 1 편

물류관리사제도의 도입

I. 문제의 소재

1. 물류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영환경변화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70년대는 생산관리시대, 1980년대는 품질관리시대, 1990년대는 물류시대, 그리고 2000년대는 Logistics¹⁾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991년말 화물유통촉진법의 제정으로 본격화된 소화물일괄수송사업이 다품종소량물류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나라의 유통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²⁾ 또한 1992년의 공영복합화물터미널을 핵으로 하는 서울, 부산의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사업은 우리나라 물류의 표준화·규격화를 촉진하고 복합운송(Unit Load)체계를 형성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활동은 운송, 창고·보관, 하역·운반, 포장, 유통가공 및 물류정보활동의 6가지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활동에 소요되는 물류비용은 현재 GNP의 약13%에 해당하는 16.8조원('90년 기준)이며, 2001년에는 약 35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큰 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물류비용을 절감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주요과제인 상품의 국제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교통난 해소 등의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유통산업에 대한 외국의 개방압력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유통산업이 외국기업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규제완화조치 등 법제도적 측면에서 지원과 함께 조속히 신규상품개발로 고부가가치물류산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할 필

-
- 1) '물류'라는 용어는 Physical Distribution의 번역어로 통상 협의의 물류개념인 '판매물류'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Logistics는 '조달물류·생산물류·판매물류'를 포함하는 광의의 물류개념으로 볼 수 있다.
 - 2) 현행법상 직접 유통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법규는 없으나,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제2조는 '유통산업이란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운송·보관·포장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정보 및 용역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여 유통의 실체를 상품유통으로 파악하고 있다.

요가 있다.³⁾ 요컨대 우리나라의 무역규모 및 생산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물류의 중요성이 점차 경제사회발전의 과제로서 부각되고 있으며,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물류, 즉 물적유통 문제에 대한 Hardware·Software적 개선방안이 정부·민간의 협동화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물류전담부서 현황을 보면, 종래에는 일부 대기업에만 물류부서가 있었으나, 최근 물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중소기업에서도 물류담당부서를 신설·운영하는 등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⁴⁾ 아직까지 조직자체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인지, 어떠한 인력이 필요한 것인지, 또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개선하여야 하는지 전혀 방향설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⁵⁾

2. 물류관리사제도의 현황

물류교육기관으로는 국내대학의 경우 물류전문화과는 전무한 상태이고 중앙대 산업교육원이 물류관리전문가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정도이며, 일부 대학에서 경영학과, 산업공학과등에서만 1강좌로 교육하는 등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배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현재 물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물류관리협회를 비롯하여 한국생산성본부(KPC), 한국공업표준협회(KSA),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앙대 산업교육원,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해운산업연구원(KMI),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등에서 물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단체에서는 일정기간 물류교육을 수료하면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물류관리사 자격증은 아직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임호규(교통개발연구원 부원장), "2000년대를 향한 종합물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로지스틱스 研究, 韓國로지스틱스學會, 1993.6., 69-70쪽.

4)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에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스텔리 허친슨사, 인터내셔널 스파사, 가네보물류, 도칸 등 세계적인 물류기업을 구축하여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5) 일본의 주요기업 1,000社의 물류 Section(1986.8현재)을 보면, 물류본부(23), 물류사업부(4), 물류부(125), 물류관리부(58), 물류관리실(28), 물류과(36), 물류담당(86), 물류자회사(78), 유통본부(2), 유통사업부(2), 유통관리부(12), 상품관리부(26), 운수본부(5), 운수부(20), 창고부(2)라는 명칭의 독립부서로 구성되어 있다(『물류시대』, 93.9월호, 99쪽). 이와 같은 현황은 우리나라와 큰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유통·물류인이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역」이라는 사고에 입각하여, 활발한 물류교육이 전개되고 있다. 일본로지스틱스학회 등 단체에서 수많은 물류관리사를 양성하고 있으며(연간 200명), 와세다대학, 일본유통경제대학 등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산학연계워크숍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현재 일본로지스틱스시스템협회가 ‘물류기술관리사’와 ‘국제물류기술관리사’라는 명칭의 자격을, 일본물류관리협회가 ‘물류관리사’라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 운수성은 93년 11월15일부터 일본로지스틱스시스템협회가 주최하는 「물류기술관리사자격인정강좌」에서 취득된 물류기술관리사에 대하여 운수장관 인정자격으로 공인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CLM(Council of Logistics Management), SOLE(Society of Logistics Engineers) 등의 단체가 '60년대부터 활발한 교육활동을 통해 물류기법과 학문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특히 SOLE는 '72년부터 CPL(물류전문가)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2회씩 물류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현재 물류관련 전공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미시간주립대학 등 1백여개로 연간 2천5백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물류선진국의 위치를 유지해 나아가고 있다. 협회로는 AST&L(American Society of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ICC(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 ATP(Association of Transportation Practitioners), CLM(Council Logistics Management)이 있다. CLM에서는 조달물류와 관련하여 구매관리사(Certified Purchasing Management:CPM)라는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이는 AST&L이나 ATP의 자격증보다 훨씬 인정도가 높다. 그밖에 물류와 관련하여 생산·재고관리사(Cretified in Production and Inventory Management:CPIM)라는 자격증도 관심이 높은 제도이다. 미국은 우리나라나 일본과는 달리 물류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는 사회나 단체, 회사로부터 특별한 인정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물류교육은 각 단체의 교육내용이나 강사진이 중복되어 특색이 없고 대략적인 개론설명에 그치고 있으며, 강의 내용도 개론적이다보니 형식적인 교육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또 교육기관으로서는 이론 위주의 교육방법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물류가 통합시스템인데 반하여 현재의 강의방식은 개별 테마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 테마별 연결이 미약한 관계로 전체적 흐름의 파악이 곤란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현장 감각이 풍부한 강사

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요구도 분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본적인 이론이야 전세계적으로 공통이니까 별 문제가 없겠으나 실무면에서는 각 나라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⁶⁾은 현재 물류교육의 문제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3. 입법상의 쟁점사항

물류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매출액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현재, 사회간접자본의 투자·확대와 함께 물류인력난 또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에 관한 시설과 체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를 운용할 전문인력의 양과 질이 물류관리의 최종적 효율성과 합리성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양성과 보급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이 업계의 현실이다. 이러한 물류관리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리에 관한 법령은 아직 입법화되어 있지 아니하며, 관련단체의 자생적 교육과 관리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물류관리의 현황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현재, 기업체마다 물류비용 증가에 따라 앞다투어 물류합리화작업에 열을 올리면서 물류시스템, 물류센터 등 하드웨어는 갖춰 가고 있지만 정작 이를 운용하고 관리할 전문인력 등 소프트웨어 부재에 허덕이고 있다. 각 기업마다 물류전담부서는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물류관리에 관한 대학교육이 거의 없고,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물류전문가가 거의 없다시피한 현시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현실적으로 유통산업계가 노력할 과제임과 아울러 입법상 문제가 될 것이다.

물류관리사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입법상의 주요쟁점사항으로는 1)물류관리사의 자격 공인문제, 2) 물류교육과 교육기관의 문제, 3)물류분야의 육성·지원, 4)관할기관 등을 들 수 있다.

물류관리사의 자격 공인문제는 물적 유통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전문가로서의 물류관리사를 국가공인자격으로 양성화할 것인가 아니면 물류단체의 임의적 자격으로 둘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는 물류관리의 전문인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자격공인으로 유인효과를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자발적 의욕에 의한 개별적인

6) “특집 물류관리사제도”, 물류시대, 91.11, 83-84쪽.

참여에 맡길 것인가의 문제이다. 아울러 국가가 인정하는 물류관리사의 양성을 위하여 법개정 또는 제정이 필요한가, 즉 물류단체와 기업의 사적인 제도로 두고 이를 육성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입법조치로서 직접 관여하고 물류제도와 연계하여 이를 양성하고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직결된다.

물류관리에 관한 교육기관과 교육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물류관리사의 전문성과 그 전문관리능력수준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물적설비의 확충지원에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국제물류의 증대와 유통산업의 개방은 전문가로서의 물류관리사를 양적, 질적으로 양성하고 교육하지 않고는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물류의 육성·지원은 물류산업 소프트웨어 부문의 지원·육성에 관한 문제로써 개별화되어 있는 물류산업의 물류관리를 어느 정도 합리화하고 구조화하는가 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물류관리 및 물류관리사의 관할기관문제는 물류를 단순한 유통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총체적·구조적 산업관계로 볼 것인가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르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물류정책 또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입법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한 각계의견, 현행법 및 관련입법안, 외국의 물류현황과 입법례를 살피고, 이를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입법방향을 언급하고자 한다.

Ⅱ. 각계의 입법의견

1. 쟁점사항별 각계의 의견

1) 물류관리사의 자격 공인문제

○ 교통부: 자격증에 관한 사항을 개별 법안에서 법조문의 신설로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화물유통촉진법 수정안 제2장 제8, 9조(물류관리사의 자격과 직무범위에 관한 조항)를 삭제하였다. 그 대신 물류관리사

조항을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법안인 「국가기술자격법」에 추가하려 하였다.

물류관리사제도의 취지는 물류관리사를 국가가 인정함으로써 물류분야의 관심을 확대시키고 정부·기업·학계가 공동으로 전문가 양성에 힘을 기울이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The Monthly Logistics Age, 1991.11호, 76-77쪽).

○ 한국물류관리협의회: 국가기술자격법은 기술과 관련된 분야를 다루는 것으로 물류관리사를 기술자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물류관리사는 기술만이 아닌 경영·사회과학 등과 혼합된 성격을 지니는데 국가기술자격법으로의 추가는 너무 기술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물류관리사의 범위가 워낙 넓고 다양하여 이를 기술자라고 봐야 하는가 하는 문제제기도 한편에서는 일고 있다(The Monthly Logistics Age, 1991.11호, 76쪽).

○ 박재원(생산성본부 경영지도사업본부 책임전문위원): 한국생산성본부가 최근 415개 제조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물류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회간접자본확충 및 운영효율화 연계화, 물류관련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혜택, 지역별 물류단지조성 및 부지확보 지원에 이어 네번째로 많은 기업들이 물류전문인력의 양성과 자격제도 도입을 원하고 있다(매일경제, 92.1.6., 15면).

2) 물류교육과 교육기관

○ 교통부: 교통부장관이 실시하게 될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 대비하여 위탁교육 전문기관을 지정, 물류교육을 할 예정이다. 위탁교육기관은 현재 물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들 중에서 각 단체들의 공신력, 교육능력, 강좌커리큘럼 및 물류교육이 총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이다(The Monthly Logistics Age, 1991.11호, 77쪽).

○ 김재일(매일경제 기자): 국내기업이 물류합리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는 실무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다.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물류개선에 대한 인식 등이 널리 확산되었지만 물류를 시스템적으로 접근하여 개선을 추진해 나아갈 전문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물류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 태부족이며, 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매일경제, 1992.1.6, 15면).

○ 매일경제 해설: 갈수록 국내의 물류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및 기업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국가공인 물류관리사 배출과 함께 유통대학 설립을 통한 정식물류교육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국내 물류산업의 소프트웨어 기근현상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93.10.06., 18면)

○ 안태호(한국물류관리협회회장): 상(商)·물(物)의 분리를 통하여 각 기능을 전문화·효율화하는 일은 물류활동전개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류부문에 대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중요한 문제라 생각된다. '기업은 곧 사람'이라 하지만 물류야말로 사람에 의해서만 합리화가 실현된다. 전문적인 사람이 없으면 물류의 근대화는 기대할 수 없다. 오늘날 일본의 물류가 우리보다 20년 앞서게 된 원인은 바로 물류전문인을 대량 배출하였다는 데 귀착된다(『物流근대화 선결과제』, 매일경제 93.10.06, 26면).

○ 이미영(일본 유통경제대학원 박사과정): 일본의 경우 물류맨을 탄생시키기까지의 열성적인 교육체계는 한 인간을 기업의 이념과 개인의 희망을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금전적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물류관리조직의 정비를 통한 물류관리상의 본연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물류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물류혁신의 第一歩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물류관리조직 정비와 인재육성방안』, 『물류시대』, 93.10월호, 98-99쪽).

3) 물류의 육성·지원관련

○ 경향신문 해설: 최근 우리 기업이 임금인상·원화절상 등 기업내·외적 요인으로 원가상승 압박이 계속되자 그 동안 수송을 포함한 물류를 하위개념으로 여겨 오던 것을 그룹차원에서 기업성장전략으로 격상시킨 것도 물류에 대

한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경향 90.10.9., 03면)

- 교통부: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화물유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화물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화물유통의 표준화, 복합운송제도의 도입, 화물터미널조성의 지원, 창고 보관업의 등록업종으로 전환, 물류관리사제도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화물유통촉진법 제정을 입법예고함(순간 법제, 1991.4.20., 40쪽).
- 상공부: 집배송단지 건립이 쉽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특히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녹지·경지 지역 가운데 필요한 지역을 상업지역 또는 개발촉진지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임(한겨레 91.07.13., 02면).
- 稻束原樹(일본물류관리협회 사무국장): 물류행정의 기초가 되는 물류관계법규는 일본국유철도법, 도로운송법, 해상운송법, 항공법 등 운송법규를 비롯하여 해운·항만 하역·보관관계법규 나아가 건설·입지·도시계획 관계법규, 그리고 안전·공해관계 법규 등 점차 정비되어 가고 있으나, 이것들의 대부분은 일본에 물류라는 종합적인 사고가 도입되기 이전의 것이며, 물류법규로서의 일원적인 법규체계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물류 관계제법규를 '물류법규'라는 관점에서 본 경우에는 상호 모순된 점, 결핍된 점, 중복된 점 등이 생기게 된다. 물류는 국민경제의 기초적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종합적인 행적목표와 정책의 기준이 확립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해관계나 소비자 관계와 마찬가지로 물류관계에도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물류대책기본법"을 새로이 제정함으로써, 정부 내의 물류행정의 일원화를 강력히 추진할 수가 있게 됨과 동시에 자치단체를 포함한 관역행정에 있어서 물류행정의 일원화를 촉진하는 데 다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물류관리협회, 「물류개론」, 439-440쪽).
- 이상주(신공항건설기획단장): 영종도신공항이 개항되면 승객의 증가로 국내항공산업의 획기적인 발전과 대규모의 인적·물적 유통에 따른 대량의 고용 기회가 창출되며, 기술·정보·지식 등 무형자산의 교역활성화로 인한 산업고도화의 촉진이 기대된다(서울 92.08.26., 17면).

○ 임호규(교통개발연구원 부원장): 우리나라에서는 화물유통촉진법이 제정되고 본격적인 물류개선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물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류기기의 표준화가 필요하며, 특히 이 중에서도 포장의 표준화와 더불어 트럭, 철도차량의 표준화가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물가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창고시설이 부족한 상태에 있고, 따라서 창고시설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고투자에 대한 부지확보규제 완화조치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세계적인 자원절약, 에너지절약, 환경문제를 감안할 때 물류분야에서도 폐기물류의 과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하는 연구가 2000년대를 향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 선진국의 물류개념은 현장중심의 개념, 즉 현장중심의 대중요법적 개념에서 Logistics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고, 또한 기업의 물류전략도 물류전략에서 물류를 경영자가 Leadership을 발휘하는 경영전략의 일환으로서 경영 Total System의 시점에서 인식하는 전략물류시대가 2000년대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시장점유율의 확대와 매출고의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큰 Vision을 가지고 종합적 물류체계의 관점에서 계획되어야 한다(로지스틱스研究, 한국로지스틱스학회, 1993.6, 76-77쪽).

○ 신동주(한국경제개발연구소 연구위원): 개개의 부문시스템의 최적화는 다른 부문시스템 상호간의 관련성의 연쇄에 따라 형성되는 전체시스템에 대해서 반드시 최적화를 유발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방안은 기업의 전체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총괄적 생산비용의 최소화과 소비자 만족의 최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배송물류비용의 최소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산과 배송시스템의 통합적 의사결정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로지스틱스研究, 한국로지스틱스학회, 1993.6, 99-101쪽).

○ 홍성욱(교통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비효율적인 물류체계의 원인으로는 ①종합물류단지 부재, ②물류와 도매기능의 연계 부족, ③관련부처간의 협조 미흡, ④화물정보망의 부재, ⑤물류표준화의 보급저조, ⑥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법제의 정비, 행정규제

완화, 유통산업 Code 신설, 유통정보망 확충, 물류단지 조성사업 검토시 예산지원과의 연계 강화 등을 행하여야 한다(『물류매가진』, 유통정보사, '93. 8월호, 85, 89쪽).

- 한국은행: '92년도 물류비용 분석결과 제조업체 물류비용이 3조2천9백49억원으로 전년대비 12.1%가 증가하고 같은 기간 매출액 증가율 10.1%을 상회하고 있다. 연도별로 물류비용이 89년 1조1천4백77억원, 90년 1조9천7백47억원, 91년 2조9천4백3억원으로 물류비중이 1.65%(91년)로 매년 0.05%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93년 상반기 사회간접자본투자액은 3조5천99억원(전년대비 13.8% 증가에 그침)으로 지속되는 물류환경의 열악성의 개선에는 미치지 못하여 올해도 제조업체들이 물류비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의 원가를 낮추고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투자를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한경 93.08.30., 01면).
- 교통부: 정부는 도로·철도·공항·경전철을 비롯, 부두·공항청사·민영주차장 역사 건립에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민자(民資)유치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매경 93.9.15., 01면)
- 안태호(한국물류관리협회회장): 기업의 물류전략은 일차적으로 각 기업이 주동이 되는 전략이기는 하나 기업물류활동의 촉진과 합리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물류시설 건립과 그 확충을 위한 보다 폭 넓은 지원을 해주어야만 한다. 물류시설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로는 보다 합리적인 물류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유통개방에 대응하는 전략추진의 기초가 될 수 있다(『物流근대화 선결과제』, 매일경제 93. 10.06, 26면).
- 경제기획원: 낙후된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연내 확정,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이에 따라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도소매업진흥법, 화물유통촉진법 등 개별법에 산재하여 있는 유통시설 관련규정을 새로운 법으로 통폐합하여 유통단지 개발을 위한 기본법으로 삼을 방침임(조선 93.11.17., 11면).

4) 물류관리의 관할기관

○ 물류업계: 현재 정부관장의 물류관련 위원회는 물류표준화위원회 등 몇몇 가지가 있으나, 표준화위원 당사자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 당면문제를 논의조차 해보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는 관·민 공히 각각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물류분야별로 설치하여 모임을 정례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법규나 소관부처가 중복되어 있어 문제가 될 경우 물류분야별 위원회는 조정활동에 큰 몫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물류정책 이렇게 돼야 한다』, 『물류시대』, 93. 5월호, 24-25쪽).

○ 홍성욱(교통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종합물류단지가 부재하고 있지만, 물류단지의 개념이 채 정립되지 못하고 유통단지, 복합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등으로 중복된 면이 있고, 관련규정도 각각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경제기획원), 화물유통촉진법(교통부), 도·소매업진흥법(상공부)으로 분산되어 있고 일관성이 없다.

현재 추진중인 물류단지조성에 있어서도 교통부, 건설부, 환경처,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간의 유기적 협조노력이 부진하여 차질이 우려된다. 물류시설에 대한 개념정립과 물류단지조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사후관리 체계의 구체적 절차 등을 법령정비에 반영하여 현 법령을 개정하거나 통합신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물류매가진』, 유통정보사, '93.8월호, 86쪽).

2. 정리 및 평가

1) 물류관리사자격제도의 공인문제: 국가기술자격법은 기술자력에 관한 기준과 명칭을 통일하여 적정한 자격제도를 확립하고 그 관리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자질 및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경제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국가기술자격법 제1조),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자격이란 '산업과 관련있는 기술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사·기능장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서(동법 제2조) 기술계, 기능계 및 서비스계로 분류된다(동법 제3조 1항).

이에 대하여 물류관리사란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및 외부포장 등 물류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서, 물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 조사, 연구, 진단, 평가 또는 이들에 대한 상담, 자문 기타 물류관리를 직무의 내용으로 한다. 그러므로 물류 전반의 종합적인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물류관리사를 산업분야에서의 특정 기술 또는 기능 등에 대한 자격인 기술자격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유사한 자격제도인 판매사나 경영·기술지도사의 경우 개별법에서 자격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격을 공인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물류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다. 다만, 정부의 시각은 물류의 혁신에 있어서 인적 요소로서 물류관리사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중요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물적 설비의 근대화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물류관련단체에서도 일본에서와 같은 종합적·체계적으로 일원화된 교육기관 내지 양성제도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정부의 공인을 어렵게 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2) 물류교육과 교육기관: 미국에서와 같은 정규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전문인의 양성은 전문교육기관에서 맡아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 정부에서 유도하거나 육성하여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물류전문인에 대한 교육은커녕 이의 필요성이나 역할의 비중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약하다. 따라서 교육부나 대학, 심지어 관련기업에서조차 물류교육에 대한 기반조성이 전혀 없고, 현실적으로 전문인력의 부족만을 호소하고 있다. 교통부의 계획처럼 단순히 전문교육기관의 지정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관련기업에서도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위탁교육과 자체교육으로 물류전담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한다는 인식이 없는 한 물류조직을 구성하고 전담할 인력의 양성이란 허구에 불과하다.
- 3) 물류의 육성과 지원: 법령상의 문제로는 일관성과 체계성이 결여된 현행법령의 정비와 절차의 간소화, 물류시설의 대폭적인 조성 및 지원 등이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의 요구사항이다. 이는 다기화된 관련법령의 정비와 종합적 시스템으로서의 물류구조와 경로를 염두에 두고 거시적 안목에서 수행되

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는 부문별 물류근대화로 축소되거나 경시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유통시설의 확충, 정보시스템의 구축, 물류표준화, 물류자동화 등의 문제는 서로 연결고리를 가진 상관된 문제이지 개별화되어 진행되어서는 그 효율성이 의심되는 성격의 현안이다. 업계의 의견은 각 부문별 애로사항과 개선점에 치중되고 있으며, 정부의 종합계획도 법령과 주무부처의 분산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각계의견에서도 기업과 정부의 일치된 노력만이 당면하고 있는 물류부문의 낙후성을 타파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 4) 관할기관: 물류부문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사후관리체계를 관할하는 기관이 일원화되거나 유기적 협조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유통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의 조성 등은 경제기획원이 관할기관으로, 화물유통촉진법상의 '복합화물터미널' 등은 교통부가 관할기관이며, 도소매업진흥법상의 '집배송단지' 등은 상공부로 분산이 되어 있고, 종합물류단지의 개념 또한 이처럼 정립되지 않은 채 3개 법률과 관할기관으로 분산되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는 유통근대화촉진법상의 '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원만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역기능으로 물류업계의 애로가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각계의견에서 나타나고 있다.

Ⅲ. 현행법, 입법안 및 외국의 입법례

1. 현행법

물류관계법규는 물류일반과 부문별 법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류일반에는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과 화물유통촉진법이 있고, 부문별 법령은 운송관계법규, 보관(창고)관계법규, 항만(하역)관계법규, 규격등 관계법규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운송관계법규는 도로운송관계법규, 철도운송관계법규·해상운송관계법규·항공운송관계법규로 세분화할 수 있고, 그밖의 관련법규로는 건설·입

지·도시계획등 관계법규, 안전관계법규, 환경관계법규를 들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의 물류관계 주요 법률 (건설·입지·도시계획, 안전, 환경 등 제외)

분 류		법 률 명	제정연월 (현 행)	비 고 (제 정 목 적)
1. 물 류 일 반		유통근대 화촉진법	1980.1 (199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여 물가안정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
		화물유통 촉진법	1991.12 (199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표준화와 복합운송주산업·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물의 유통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화물의 유통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2. 운 송	(1) 도로 운 송	자동차운 송사업법	1961.12 (199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 운수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함.
		육운 진흥법	1977.12 (198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운사업을 진흥시킴으로써 공로운송의 원활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
		철도법	1961.9 (198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도의 원활한 유통을 통한 공공의 복리증진
		공공철도 건설촉진법	1984.4 (199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분	류	법률명	제정연월 (현행)	비고 (제정목적)
	(2)철도 운송	공공철도 건설촉진법	1984.4 (1991.3)	간소화하여 공공철도를 효율적으로 건설·개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철도교통망의 확충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도시 철도법	1979.4 (199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여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
		도시철도 사업특별 회계법	199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철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규정
		철도소운 송업법	1961.12 (199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도운송에 관한 질서의 확립, 소운송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송효율의 향상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 증진
	(3)해상 운송	해운법	1983.12 (199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
		해운산업 육성법	1984.8 (199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항공법	1991.12 (199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의

분	류	법률명	제정연월 (현행)	비고 (제정목적)
	(4)항공 운송	항공법	1983.12 (1993.3)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 설치·관리 의 효율화를 기하며 항공운송 사업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 진에 이바지함.
		항공운송 사업진흥법	1971.1 (1991.12)	• 항공운송사업을 진흥시킴으 로써 그 국제적 지위의 향상 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 게 함.
3. 보 관(창고)		화물유통 촉진법	1991.12 (1993.8)	• 1991.12 창고업법 폐지. 창고업에 관한 규정(동법 제 39조 내지 제48조)
4. 항 만(하역)		항만법	1991.3 (1993.8)	• 항만의 지정·개발·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항만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도 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 바지함.
		항만운송 사업법	1963.9 (1993.8)	•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 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복리 를 증진함.
		한국컨테 이너부두 공단법	1989.12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설 립하여 컨테이너부두를 효율 적으로 개발 및 관리·운영하 게 함으로써 컨테이너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

분 류	법 률 명	제정연월 (현 행)	비 고 (제 정 목 적)
5. 규격 등	화물유통 촉진법	1991.12 (1993.8)	• 물류표준화에 관한 규정 (동법 제5조 내지 제7조)
	계량및측 정에관한 법률	1992.12	• 계량 및 측정에 관한 국가표준 을 확립하고 이의 체계적 보 급과 통일적 적용으로 적정한 계량 및 측정의 실시를 확보 하여 산업의 합리화에 이바지 함.

2. 입법안

1) 물류관리사제도 관련

물류관리사의 자격과 시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화물유통촉진법제정안이 91.5월에 입법예고되고 일부 수정된 안이 91.8월에 경제장관회의에 상정된 후 물류관리사의 자격과 시험에 관한 사항이 삭제된채로 법률로 통과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삭제된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화물유통촉진법(수정)안(경제장관회의 상정안, '91.8)

i) 정의(화물유통촉진법안 제2조 4호): 물류관리사라 함은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및 외부포장 등 물류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ii) 자격(화물유통촉진법안 제8조): ① 물류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ii) 직무범위(화물유통촉진법안 제9조): 물류관리사는 제조업체 등에 소속되

거나 또는 독자적으로 물류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 조사, 연구, 진단, 평가 또는 이들에 관한 상담 자문 기타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나) 화물유통촉진법 제정시안(입법예고, '91.5)

- i) 정의(제2조제3호): 물류관리사라 함은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및 외부포장 등 물류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 ii) 자격(제9조): “위 경제장관회의 상정안의 제8조와 동일”
- iii) 결격사유(제1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물류관리사가 될 수 없다.
 -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3.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5.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iv) 자격취소(제11조): 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
 - 2.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물류육성·지원 관련

가) 유통단지개발촉진법(가칭) 제정계획

① 입법취지: 해마다 기업 매출의 14 - 18%에 이르는 물류 비용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물가불안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낙후된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도·소매업진흥법, 화물유통촉진법 등 개별법에 산재하여 있는 유통시설 관련규정을 새로운 법률로 통합하여, 유

통단지 개발을 위한 기본법으로 삼을 방침임.

② 주요 내용:

-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유통시설 입지에 대한 규제일변도의 법률체계를 시정하여, 프랑스·독일·일본 등 선진국처럼 정부가 유통시설 전용입지를 지정하고 용도변경 등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여 공업단지 개발과 비슷한 수준으로 절차를 간소화함.
- 유통단지 입주대상시설: 화물터미널, 집배송센터, 도매시장, 단순 가공공장 등으로 결정할 방침이며, 백화점·쇼핑센터·슈퍼마켓 같은 판매시설까지 포함시키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임.
- 개발방식: 정부가 현재 입법을 추진중인 「민자유치에관한특별법(가칭)」에 따라 민·관합동개발(제3섹터)방식을 채택할 계획임. 복합유통단지 진입로와 급전·급수시설 같은 기간시설 건설을 정부가 지원함.
- 육성·지원: 트럭터미널, 집배송센터, 창고, 화물적치장들이 입주하는 대규모 복합유통단지 구성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경우 부지를 싼값에 공급받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공업단지 구성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물류전문업체에 입주권을 우선 제공하고 부지를 조성가격 수준에서 싼값에 공급할 방침임.

③ 추진일정: 연내에 제정안을 확정, '94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임(경제기획원).

3. 외국의 입법례

1) 일본의 물류관계법규

일본의 물류 관계법규는 도로수송 관계법규, 철도수송 관계법규, 항만·하역·보관 관계법규, 해상수송 관계법규, 항공수송 관계법규, 건설·입지·도시계획 관계법규, 계량·기술 관계법규, 안전 관계법규 및 공해 관계법규 9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⁷⁾

7) 안태호, 물류개론, 한국물류관리협회의, 1991, 441쪽.

① 운송관계법규

- i) 도로수송 관계법규: 도로교통법(제57조, 75조, 119조), 도로운송법(제8조 제99조), 도로운송차량의보안기준(제2조, 제4조), 차량제한령(제3조), 도로운송차량법
- ii) 철도수송 관계법규: 통운사업법(제2조, 제20조), 철도사업법, 철도영업법, 일본국유철도개혁법.
- iii) 해상수송 관계법규: 해상운송법(제19조의 6), 내항해운업법, 국제해상물품운송법
- iv) 항공수송 관계법규: 항공법

② 보관(창고)관계법규: 창고업법.

③ 항만(하역)관계법규: 항만운송사업법(제9조), 항만법.

④ 규격 등 관계법규: 일본공업규격(JIS), ISO규격, 계량법, 공업표준화법.

⑤ 기타 관련법규: 건축기준법(제21조), 유통업무시가지의정비에관한법률(제1조, 제3조, 제5조), 공업입지법, 중소기업사업단법.

2) 일본의 물류기술관리사제도 자격 공인

일본 교통부(운수성)은 사단법인 일본로지스틱시스템협회가 실시하는 「물류기술관리사자격인정강좌」의 심사·증명사업에 대하여 지난 11월15일자로 자격을 승인하고 있다. 이는 '91년 9월 창설된 「물류업에 있어서의 노동자의 지식 및 기능 심사·증명사업인정제도」의 일환으로서 국제복합수송사양성강좌, 국제항공화물취급사 심사·증명사업에 이어 세번째이다.

「물류기술관리사자격인정강좌」는 로지스틱스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일본로지스틱시스템협회가 금년도부터 개강한 것이다.⁸⁾ 물류기술관리사는 포장·수송·보관·정보 및 물류 전반에 있어서 관리기술을 습득한 물류전문가자격이다. 물류관련협회에서는 동 강좌의 교통부장관(運輸大臣)에 의한 인정으로 물류기술관리사의 활약이 물류업계의 위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8) 현재 제4기 강좌가 시작되고 있는데, 약 300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제1기 강좌에서는 73명이 교통부장관(운수대신)이 인정하는 물류기술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IV. 입법방향

1. 우리나라는 교역량 세계 10위에 달하는 수출국이면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국제물류관리사라는 개념조차 물류산업분야에서 생소한 현실에 있다. 국제물류의 기반인 국내물류분야에서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류관리와 물류관리사제도가 미미한 실정인 점에서 본다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유통산업은 물류가 전제되어야 최대 이윤의 보장이 가능하다. 유통경로의 합리화 내지 이에 대한 탄력성부여는 유통코스트를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자체에 있어서도 상품의 회전율을 높이므로 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바탕 위에서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 있어서는 유통경로가 보다 짧고 단순화되어 가고 있는데 반하여 후진국에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유통구조가 제도화로부터 이탈되고 복잡성을 띠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 있어서의 유통경로의 변혁은 유통기관의 혁신적인 형태마저 등장하게 하였다. 우리나라의 유통구조는 후진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상품별로 가장 합리적이며, 수익성 실현을 위한 과감한 혁신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물류관리사제도를 둘러싼 입법상의 문제는 물류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류제도가 물적 요소, 관리기법적 요소, 인적 요소로 구성된다고 본다면, 물류관리사제도는 물적 유통경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유통의 합리화와 원활화를 결정하는 관리주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결국 물류에 관한 모든 결정과 정책 및 방안의 수립은 이들의 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전문인이라는 특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조직이며, 이들의 자율적 손에 맡길 수 없는 제도적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고려되고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물류관리사제도는 제도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다만, 법적 제도로 정착시킬 것인가, 자율적 제도로 지원·육성할 것인가가 문제이며, 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2. 물류관리사제도의 도입은 정부나 관련업계 모두 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기업측에서의 현실적 필요성과 정부측의 인식도가 다를 뿐이다. 기업

의 입장에서는 물류에 관한 전문인으로서 시급한 인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정부는 하나의 전문 자격제도의 도입 정도로 인식하고 물류의 개선에 있어서 유통시설에 관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물류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유통근대화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 그리고 입법안이 나와 있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안) 또는 물류자동화촉진법(안) 등이 선진국의 입법례를 쫓아가고는 있으나, 정작 이들 법들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인적 자원의 문제는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운용자가 없는 설비는 오히려 장애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물류관리사의 자격공인에 직결된다. 법제화를 통하여 국가 공인자격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관련단체의 임의적 자격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물류전문인으로서의 물류관리사가 어떠한 역할과 비중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단순 기술자격으로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인 자격으로 파악될 것이다. 또한 물류는 각 관련 기업과 산업의 전체에 연결된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거시적이고 동적이며 종합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더구나 국제물류가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물류의 관리범위는 넓을 수 밖에 없다.

이상의 점을 고려한다면, 법제화를 통한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정하여 전문인력의 양성과 이의 활용에 적극성을 띠어야 할 것이다. 다만, 국가자격제도의 목적은 특정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후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공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데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자격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먼저 자격을 부여함에 있어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자격취득 이후에도 자격업무의 전문성과 질적 개선 및 자격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물류관리사를 국가자격으로 승격시킴에 있어서도 당연히 입법의 내용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물류관리사제도 도입의 입법형식은 현행법상 이와 유사한 자격제도인 판매사제도와 경영·기술지도사제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모두 국가자격제도로 각각 관련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물류관리사제도는 이들 양자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그 구체적인 자격과 시험방법을 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3. 물류교육과 교육기관의 문제는 물류산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전문인을

양성한다는 측면과 물류관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법과 기술을 개발·전수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다. 물류의 거시적·종합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물류의 경로단계별 교육과 함께 종합적인 유통교육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기업 자체의 단편적인 물류교육조차 부재하고, 관련단체 내지 협회에서 행하고 있는 소규모의 임의적 물류교육만으로는 당면하고 있는 물류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전문 물류인력을 양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물류정책이 설비부분에 치중하고 있고, 기업 또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류전공학과가 대학에 개설되어 있지 않고, 이를 담당할 전문교육기관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물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물류관련협회나 단체의 교육 실정이 그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자의 구성을 볼 때 물류가 산업 전반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비하여 열악하기 짝이 없고, 물류교육이 단편적이거나 기관간의 교육자의 중복을 피할 수 없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그러므로 물류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정규교육기관을 설정함이 필요하며, 최소한 일원화되고 체계화된 교육을 물류관련단체가 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또는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연간 2500여명 이상의 물류전문인력은 정규대학교육을 통하여 양성하는 미국이나, 일원화되고 공인된 물류연합단체의 체계적 교육을 통하여 물류관리사와 국제물류관리사로 전문화하여 양성하고 있는 일본과 개방화시대에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류교육의 후진성과 낙후성을 지양하여야 함은 시급한 문제이다.

4. 물류분야의 육성과 지원은 상적유통과 물적유통으로 대별되는 유통산업 중 특히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물적유통의 분야에 있어서 물적설비를 확충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이와 관련한 법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법령으로 유통근대화촉진법을 근간으로 하는 유통관계법령이 있으나, 대부분 근간만 마련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정책의 집행이나 실현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대규모 유통단지의 건설, 물류표준화 작업, 물류정보시스템의 구축, 물류관리사의 양성 등으로 집약되는 물류산업의 현대화는 이제서야 기업과 정부에서 본격적인 투자와 지원의 의욕을 보이고 있을 뿐이며, 구체적인 방법론과 실현책은 없이 계획에 그치고 있다. 물류산업은 개별화하여서는 그 효율성이 극히 감소하는 종합적인 분야이다. 비록 유통근대화촉진법이 경

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가 유통산업근대화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며, 유통단지의 지정, 조성, 관리, 운영, 자금지원, 세제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의 수립과 실행은 극히 미미한 형편이다. 이는 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가 경제기획원과 7개 관련부처, 서울특별시장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심의와 집행에 있어서 각 부처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도출이 용이하지 못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과 관련하여 입법에 있어서도 각부처간의 이해가 상충하여 유통관련법 중 물류관련 분야의 기본법으로서의 「물류산업촉진법(가칭)」을 제정하려던 계획이 변질되어 물류단지건설과 물류자동화를 촉진하는 내용으로 국한하여 「물류단지건설및자동화촉진법(가칭)」의 제정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는 다시 「유통단지개발촉진법(가칭)」으로 수정되어 유통시설 관련규정만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결국 교통부, 건설부, 상공부, 경제기획원으로 대표되는 물류관련부처의 이해관계가 작용하여, 종합적인 물류산업의 육성과 지원이라는 차원의 입법계획이 각 부처 소관업무 분야로 축소되는 기현상을 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물류는 현재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더라도 앞으로의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극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이 각 부처의 이해관계나 업무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왜곡 또는 지연되거나 분산·개별화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이다.

〈〈부 록〉〉

1. '92년도 제조업체 물류비용 분석

연 도	1989	1990	1991	1992
물류비용	1조1천4백77억원	1조9천7백47억원	2조9천4백3억원	3조2천9백49억원
물류비중			1.65%	1.70%

〈참 조〉

- 제조업체 물류비용: 91년대비 12.1% 증가, 같은 기간 매출액 증가율 10.1%
- 93년 상반기 사회간접자본투자액은 3조5천99억원(전년대비 13.8% 증가에 그침)
(이상 한국은행 분석자료)

2. 교통부 '93년도 추진계획관련 보고내용('93.3.27)

- 물류체계 확립 부분

1) 현 황

- 물류시설의 부족, 유통구조의 낙후로 과도한 물류비용 발생: GNP 대비 물류비는 한국 15%, 미국 10.3%임.
- 터미널 중심의 수송체계가 미흡하여 수송효율이 낮은 실정

2) 추진계획

가. 복합화물터미널 중심의 유통체계 구축:

전국 주요도시 주변에 복합화물터미널을 단계적으로 건설하되 우선 수도권(부곡)과 부산권(양산)은 금년 하반기에 착수하여 '95년까지 완공

나. 화물유통관련제도의 정비

- 수송·하역·보관 등에 필요한 물류시설과 장비를 표준화하여 화물유통 비용을 절감
- 유통관련 서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정보전산망을 구축하고 '93년 상반기 기중에 시험운영

다. 화물일관수송체계의 구축

- 육·해·공 수송을 단일주체가 일괄하여 수행하는 복합운송주선업을 육성
- 소화물 일관수송망을 확대하여 전국 어느 곳이나 2일이내 배달이 가능하도록 문전배달체계를 확립

3. 유사 자격제도의 현황- 판매사, 경영·기술지도사

제도명	근거법령	직무내용	자격요건	자격취득상 특례사항	비 고
판매사	도·소매업진흥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34조	경영 및 판매기법의 향상	판매사시험에 합격한 자(응시자격 제한 없음)	2·3급의 경우 도소매업진흥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한 자격시험점수 임의 가산(도·소매업진흥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2)	관할기관: 상공부(유통산업과) 등록인원수 (93.6현재): 2급 9,915명 3급 16,666명

제도명	근거법령	직무내용	자격요건	자격취득상 특례사항	비 고
판매사				<p>1.도·소매업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연수과정울 40시간 이상 수료한 자가 3급시험에 응시하여 각 과목별 성적 이 40점 이상인 경우 각 과목별 점수에 20점의 범위내에서 일정 점수 임의 가산</p> <p>2.도·소매업분야에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연수과정울 60시간이상 수료한 자가 2급시험에 응시하여 각 과목별 성적 이 40점이상인 경우 각 과목별 점수에 20점의 범위내에서 일정 점수 임의 가산</p>	

제도명	근거법령	직무내용	자격요건	자격취득상 특례사항	비 고
경영· 기술 지도사	중소기업 진흥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 동법시행 규칙 제9조- 제13조의 3	1. 경영지도사 1) 경영종합 진단 및 지도 2) 인사·조 직·노무 ·사무관 리 3) 재무·생 산관리진 단 및 지 도 4) 판매관리 ·수출입 업무진단 및 지도 2. 기술지도사 1) 기술종합 진단 및 지도 2) 신기술개 발 진단 및 지도 3) 정보처리 진단·지 도 등	1. 지도사시 험에 합격 한 자(응 시자격제 한없음) 2. 상공부장 관이 지정 한 기관의 지도사 양 성과정을 이수한 자 3.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일정 한 자격을 가지거나 특정분야 의 박사학 위 소지자	시험면제대상 및 내용 1. 지도사의 양 성과정을 이 수한 자(과정 후 소정의 시 험이 있음) * 양성과정을 이수할 자격 이 있는 자 1) 석사학위 소 지자로서 해 당분야 7년 이상 실무경 력자 2) 대학졸업자 로서 해당분 야 10년이 상 실무경력 자 3) 전문대학졸 업자로서 해 당분야 15년이상 실무경력자 4) 지도기관에 서 5년이상 경영 또는 기술지도관 련 근무경력 이 있는 자	관할기관: 상공부(진 흥과) 등록인원수 (93.3.6. 현재): 경영지도사 3,464명 기술지도사 2,345명

제도명	근거법령	직무내용	자격요건	자격취득상 특례사항	비 고
경영· 기술 지도사				<p>2.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p> <p>1)국가기술자 격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p> <p>2)경영학, 경제 학 또는 자 연과학분야 박사학위 소 지자로서 대 학(사범, 교 육, 전문대 포함)에서 3년이상 강 의한 경력 또는 지도기 관에서 3년 이상 경영, 기술지도관 련 근무경력 이 있는 자 (중소기업진 흥법 제27조, 동 법시행령 제 29조의2)</p>	

제 2 편

최근입법의견 동향 및 최신법령소개

I. 최근입법의견 동향

○ 분류기준표

분 야	대한민국헌행법령집해당항목
憲 政	제1권1헌법, 2국회, 제2권3선거·정당
統一·外交·國防	제14권13군사(1), 제15권13군사(2), 14병무, 15국가보훈, 제47권44외무, 45조약(1), 제48권45조약(2), 제49권45조약(3)
內務·地方行政	제3권4행정일반, 제4권5국가공무원, 제10권10지방제도(1), 제11권10지방제도(2), 제12권11경찰, 제13권12민방위·소방
社會·文化·教育	제16권16교육·학술(1), 제17권17교육·학술(2), 제18권17문화·공보, 제38권38사회복지, 제40권40노동(1), 제41권40노동(2)
產 業·經 濟	제20권19재정·경제일반(1), 제21권19재정·경제일반(2), 제22권20내국세(1), 제23권20내국세(2), 제24권21관세, 22담배·인삼, 제25권23통화·국책·금융, 제30권28상업·무역·공업, 제31권29공업규격·계량, 30공업소유권, 제32권31에너지이용·광업, 제33권32전기·가스
農 林·水 産	제26권24농업(1), 제27권24농업(2), 제28권25축산, 26산림, 제29권27수산
建 設	제34권33국토개발·도시, 제35권34주택·건축·도로, 제36권35수자원·토지·건설업
科學技術·交通·遞信	제19권18과학·기술, 제42권41육운·항공·관광(1), 제43권41육운·항공·관광(2), 제44권42해운(1), 제45권42해운(2), 제46권43체신
環 境·保 健	제37권36공중위생·의사, 제38권37약사, 제39권39환경
法 院·法 務	제5권6법원, 제6권7법무, 제7권8민사법(1), 제8권민사법(2), 제9권9형사법

1. 최근입법의견목록

(1993. 10. 11. ~ 1993. 12. 10)

- ◎ 憲 政 43
 - 국회법 및 국회사무처법 개정의견
 - 긴급명령관련 입법의견
 - 선거관계법 개정의견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헌법재판소관련 입법의견

- ◎ 統 一 · 外 交 · 國 防 48
 -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가칭) 제정안
 - 군사기밀보호법 및 동시행령 개정안
 - 군사법원법 개정의견
 -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
 -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개정안
 - 군인연금법 개정안
 - 군인연금법시행령 개정안
 - 군인사법 개정안
 - 군형법 개정의견
 - 병역법 개정의견
 - 병역법시행령 개정의견
 - 여권법시행규칙 개정안
 - 참전군인등에관한지원법률(가칭) 제정의견

- ◎ 內 務 · 地 方 行 政 53
 - 감사원법 개정의견
 -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 개정의견
 - 공무원임용령 개정의견

- 교민의 재산권보호관련 입법의견
- 교원복무규정 제정의견
-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의견
-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의견
- 민원사무기본법(가칭) 제정안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안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
-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의견
- 정부조직법 개정의견
- 지방자치법 개정의견
-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社會·文化·教育 58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공휴일축소관련 입법의견
- 교육법시행령 개정의견
- 고용보험법(가칭) 제정안
- 국가기록물보존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귀순북한동포보호법시행령 제정의견
-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의견
- 근로자파견사업의규제및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문화재보호법 개정의견
- 민주시민교육원설립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방송법 개정의견
- 사행행위등규제법 개정의견
- 장애인교육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장애인복지제도개선관련 입법의견
- 종교법인법(가칭) 제정의견
- 통신비밀보호법(가칭) 제정안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

◎ 産業・經濟 68

- 국세기본법 개정의견
-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의견
- 금융실명제관련 입법의견
- 부동산실명제관련 입법의견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견
- 상품권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개정안
- 세무사법 개정의견
- 신용정보법(가칭) 제정의견
- 예산회계법 개정의견
- 의자도입법 폐지의견
- UR관련 입법의견
- 유통단지개발촉진법(가칭) 제정의견
- 자산재평가법 폐지의견
- 저작권법 개정안
- 증권거래법 등 개정의견
- 토지초과이득세법 개정의견
- 특허법시행령 개정의견
- 화학무기금지협약관련 입법의견

◎ 農林・水産 78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개정의견
- 농어촌정비법(가칭) 제정안
- 농업재해특별보상법(가칭) 제정의견

◎ 建 設 80

- 건설관리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건축법시행령 개정의견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정안
- 도시공원법시행령 개정의견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의견
- 전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해안역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개정안

◎ 科學技術・交通・通信 86

- 교통계획및조정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도로교통법 개정의견
- 도로교통촉진법 개정의견
- 발명진흥법(가칭) 제정의견
- 사회간접자본확충을위한민자유치촉진특별조치법(가칭) 제정의견
- 유선및도선업법 개정의견
- 임시우편단속법 폐지의견
-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 차고지확보등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항공법 개정안

◎ 環境・保健 90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배아보호법(가칭) 제정의견
-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개정의견
- 약사법 개정의견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의견
- 의료법 개정의견
- 의료분쟁조정법(가칭) 제정의견
- 응급의료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정신보건법(가칭) 제정의견
- 지하수법(가칭) 제정의견
- 폐기물처리시설정비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환경개선특별회계법(가칭) 제정안

◎ 法院·法務 96

- 가정폭력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경찰관집무집행법 개정의견
- 국가배상법시행령 개정의견
- 국적법 개정의견
- 기술판사제 도입관련 입법의견
- 뇌사 및 장기이식관련 입법의견
- 법의관제 도입관련 입법의견
- 사법제도개선관련 입법의견
- 성폭력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의견
- 행형법 개정의견
- 형사소송법 개정의견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2. 최근입법의견요지

(1993. 10. 11. ~ 1993. 12. 10)

◎ 憲 政

○ 국회법 및 국회사무처법 개정의견

- 국회의 입법기능 강화를 위하여는 ①정부의 법제처와 같이 법안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심사하는 법제실의 신설, ②상임위 전문위원 및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제도의 개편, ③의원의 정책·입법보좌관의 신설이 필요함. 특히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제도는 제헌의회 이래 계속된 구제도로써 전문성과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전면개편되어야 함(국회사무처·학계).
- 우리 국회의 전문위원제도는 성격상 ①본안에 대한 전문성, ②의회에 대한 충성심, ③법률지식 등 어느 조건도 만족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상임위전문위원제도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제도를 통·폐합하여 교섭단체별로 전문위원수를 나누고 숫자도 크게 늘려 입법보좌기능 등을 강화하여야 함(박재창 숙명여대교수).

: 한겨레 93.10.25., 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66면)·제8호(64면)·제9호(85~86면)·제12호(65면) 참조

○ 긴급명령관련 입법의견

- 1950년 이후 발동된 대통령의 「긴급명령」중 4건이 대체입법등 후속조치가 없어 40여년 동안 해제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데, 이들 긴급명령은 비록 사문화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폐지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면 입법부의 입법미비를 의미하는 만큼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입법부에서는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에 따라 폐지를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야 함. 「금융실명제긴급재정경제명령」과 관련하여서는, 명령의 형태로 존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행과정에서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체입법을 통하여 보다 완전한 법률

로 제정할 필요가 있음(허영 연세대 교수).

: 세계 93.11.30.,22면

○ 선거관계법 개정의견

- 당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공직자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가칭)」 제정안은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한편, 선거범으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연좌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함. 이 통합선거법안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을 법정화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을 대통령선거 1백16억원, 국회의원선거 4천5백만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대통령선거 기간을 21일로 줄이는 등 각종 선거운동 기간을 단축하며, 또 전국구 의석배분을 현행 의석비례제에서 득표비례제로 바꾸고 국회의원 지역구간 인구편차를 4대 1로 명문화하며, 합리적 선거구확정을 위하여 국회내에 '선거구획정위'를 두도록 함. 선거운동 방법에 있어서는 포괄적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개인연설회를 허용하는 대신 합동연설회와 유급운동원제를 폐지함. 그러나 언론인 현직보유 출마를 허용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바꾸어 선거일 90일전에 사임토록 하고 확장장치 사용하는 개인연설은 무제한 허용에서 읍·면·동 수 만큼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함(민자당).
- 민주당이 마련한 「공직자선거법(가칭)」 제정안은 국회의원선거 투표시 후보자와 함께 지지하는 정당을 기표하는 '1인2투표' 방식을 도입하고,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되 비례대표 후보자의 2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함. 또 현재 시·도지사의 경우 35세, 구·시·군 단체장의 경우 30세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25세로 대폭 낮추었으며 선거권 연령도 20세에서 18세로 인하함. 현직언론인의 당적보유의 각종 공직선거 출마를 허용하고 선거공영제를 확대하여 합동연설회, 선전공보, 선전벽보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며, 각 선거별로 일정수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의 소형인쇄물 및 TV·라디오 연설비용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이와 함께 통·반장, 예비군소대장 등이 선거운동을 할 때는 선거 90일전에 사임케 하고 2년 이내 복직을 금지함(민주당).
- 선거기간중의 당원단합대회는 '당원만 참석시킨다'는 구실아래 타당 인사들

의 출입을 봉쇄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기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당 추천을 받지 못한 무소속 입후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금지를 명문화하여야 함. 아무리 그럴듯한 법을 만들더라도 위반자를 수사하여 기소하는 검찰의 공정성·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사건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하여도 불기소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실질적으로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또한 선거운동비용이나 연좌제의 도입 등의 규제조항만으로는 부족하고 ‘돈선거’를 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공감의 생길 정도로 집행력이 보장되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아야 할 것임 (박상천 민주당의원).

- 정치관계법 개정 청원안 중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에서는 ①검찰이 고의로 선거사범처리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재정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선관위뿐 아니라 시민단체, 일반시민에게도 재정신청권을 인정하며, ②선거권을 갖는 나이는 현행 20살에서 19살로 낮추고, ③득표배분·의석배분으로 논란중인 전국구 의석과 관련하여서는 독일 연방의회 선거나 일본 참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1인2표제’를 도입하고 특히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지역구와 전국구 의석비율을 2대 1로 하며 전국구로 당선한 의원이 당적을 옮길 때는 의원직을 박탈하여야 함. 또한 ④선거에서 많은 이점을 갖는 기호 1번을 현재 관행처럼 다수당에 배정할 것이 아니라 후보자간 추첨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⑤완전한 선거공영제를 위하여 소형 인쇄물, 투개표 참관인 수당 등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선거공보제도를 신설하고, ⑥합동연설회는 남겨두는 대신 현수막을 없애도록 하여야 함. ⑦선관위 및 민자·민주양당이 제기한 통합선거법 제정, 선거 동시 실시, 선거운동기간 축소, 포괄적 금지조항 삭제, 연좌제 도입 등에는 찬성함(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 중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에 비하여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으나 최근 법정선거비용이 대폭 축소되는 등 돈안드는 선거풍토가 정착되고 있는 데다 소선거구제도가 지방자치시대의 선거형태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도 대신 한 선거구에서 2~3인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여성대표는 물론 각계각층의 직능대표를 골고루 국회로 진출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유권자가 투표할 때 지역구후보자와 함께 정당에도 1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구의석을 정당득표율에 의하여 배분하도록 하는 1인 2표제를 실시하여야 함. 또한 여성의 정치권 진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선출하는 모든 선거직에 어느 한 성이 8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할당제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이와 함께 통합선거법의 제정, 선거일의 법정화와 동시선거의 실시, 선거공영제의 전면실시, 유급선거운동원제도의 폐지와 자원봉사제도의 도입, 선거권의 연령을 19세로 하는 등 선거관계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임(정치관련법 개정을 위한 여성단체모임, 1993. 11.2).

: 세계 93.10.11.,3면; 서울 93.10.15.,2면; 한국 93.10.16.,2면; 서울 93.10.16.,4면; 조선 93.10.19.,2면; 조선 93.10.20.,2면; 한국 93.10.20.,2면; 경향 93.10. 23.,3면; 한국 93.10. 26.,4면; 한겨레 93.10. 26.,4면; 경향 93.10.26.,4면; 조선 93.10.28.,3면; 한국 93.10.28.,2·4면; 국민 93.10.28.,2면; 경향 93.10.31.,2면; 세계 93.11.1.,3면; 한국 93.11.4.,12면; 한겨레 93.11.4.,10면; 국민 93.11.5.,11면; 조선 93.11.6.,3면; 동아 93.11.6.,4면; 한국 93.11.6.,5면; 한겨레 93.11.6.,4면; 경향 93.11.6., 4면; 세계 93.11.6.,3면; 서울 93.11.6.,3면; 국민 93.11.6., 4면; 한겨레 93.11. 8.,4면; 조선 93.11.9.,2면; 동아 93.11.11.,2면; 한국 93.11.11.2면; 국민 93.11.11.,2면; 서울 93.11.11.,2면; 한국 93.11.13.,3면; 국민 93.11.12.2면; 국민 93.11.13.,3면; 한겨레 93.11.13.,4면; 한겨레 93.12.1.,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38면) · 제6호(66~67면) · 제7호(58면) · 제8호(65~66면) · 제9호(7~41면) · 제10호(70~72면) · 제11호(66~68면) · 제12호(65~68면) 참조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당비납부에 대한 상한선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그동안 정당들이 이를 악용하여 전국구나 지역구공천을 댓가로 당비를 헌납 받는 정치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당비납부상한선을 5억원 또는 전년도소득

의 5% 가운데 많은 액수로 제한하는 등 법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기로 함(민자당).

- 정치관계법 개정청원안 중에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과 관련하여서는 ①각 정당의 당헌·당규로 규정하는 당원의 당비는 정당자율성을 높이고 당내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며, ②국고보조금 문제는 현행 유권자 1인당 6백원씩 계산하여 예산에서 지급하는 방식보다 개인이 연말에 개인소득을 정산할 때 소득세 가운데 일정액(2천~3천원 정도)을 지정 또는 비지정기탁방식으로 기부하도록 하여 일반국민의 정치참여 의식을 높이고, ③또 노동자의 정치참여를 막고 있는 노동조합법을 고쳐 노동단체도 정치자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④기탁금제도는 기부상한액을 설정하는 기부증서제(쿠폰제)로 대체하고, ⑤선거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관위에 선거자금 실사권을 주며 선거자금의 수입지출 결산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하게 하여야 할 것임(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 후원회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거나 공영화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제도는 점진적으로 폐지하여야 할 것임(정치관련법 개정을 위한 여성단체모임, 1993.11.2).

: 한국 93.10.15.,2면; 경향 93.10.15.,2면; 세계 93.10.15.,2면; 서울 93.10.15.,2면; 한국 93.11.4.,1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4호(23~24면) · 제6호(68면) · 제8호(66~67면) · 제9호(50~59면) · 제10호(50~59면) · 제11호(69~70면) · 제12호(69~70면) 참조

○ 헌법재판소관련 입법의견

- 그동안 우리나라 일반법원의 법률해석 작용과정에서 이에 대한 통제권이 전혀 없어 기본권침해가 적지 않았으므로 기본권보호를 위하여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소원대상으로 인정해야 하고, 헌법소원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유사한 사건의 법원판례에 구속을 받으면 헌재는 본안의 심판대상에 대하여 새로운 법적 판단을 회피할 위험성이 커 헌법재판 기능의 수행까지 방해받는 측면이 많으므로 재판소원을 인정하여 헌재의 본래적 위상과 지위를 찾아야 할 것임. 따라서 재판소의 인정을 위하여 「헌법재판소법」의 관련조

항 개정과 연구진들의 충원 및 학계와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변호사강제주의의 활용을 통한 항소방지가 선결되어야 할 것임(이명웅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한국공법학회주최 학술발표회 『헌법재판의 경험과 개혁방향』, ‘헌법작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의 필요성’, 1993.11.20).

- 현행 우리 헌법상의 위헌법률심사제는 법률이 공포된 뒤 시행중에 심사를 하는 사후적 위헌심사제로서 위헌법률의 공포·시행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및 위헌적 공권력 행사에 노출되어 있는데, 입법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예방과 위헌입법의 원천적 봉쇄를 위하여 법률의 공포전에 행하는 사전적 심사제를 도입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임. 사후심사는 특히 국제조약에서 위헌결정시 조약대상국과의 관계에서 효력의 문제 등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예방차원의 사전심사가 절실한데 사전심사의 전면도입이 어려울 경우 우선적으로 한정된 영역에 대해서만이라도 인정한 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중립성과 능력을 갖춘 인사의 선임 등을 위한 구성과 조직상의 준비가 현재기능의 중요한 관건인데 현행 3부에 의한 헌법재판관 선임방식은 당파성을 표출할 수 있고 공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만큼 국회단독에 의한 선출방식이나 시민대표자들로 재판관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한 후 국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채택하여야 할 것이고,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장 선출방식을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보장과 재판소장이 변론의 지휘를 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관들에 의한 선출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정재황 홍익대학교수, 한국공법학회주최 학술발표회 『헌법재판의 경험과 개혁방향』,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 절차상의 문제점’, 1993.11.20).

: 세계 93.11.22., 9면

◎ 統一·外交·國防

○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가칭) 제정안

- 개발도상국에 파견하는 의사 및 봉사단원 등 국제협력요원에게 일정 기간 직무교육을 받은 뒤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동안 개발도상국(외무장관

이 지정)에서 활동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자동적으로 면제하는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

: 한겨레, 93.11.12., 2면

○ 군사기밀보호법 및 동시행령 개정안

- 군사기밀의 공개요청을 신설하는 등 국방부가 마련한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은 ① “모든 국민은 기밀공개를 국방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군사기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② 법에 따른 기밀제출요구시, 군사외교상 필요시, 국제협정에 따른 국제기구나 외국의 요청시, 학문연구나 기술개발등의 목적으로 연구기관의 요청시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③ 군사기밀에 대하여 ‘누설시 국가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관련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또는 물건’이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해 기밀의 범위를 축소하고, ④ 국민의 군사기밀 요청권을 ‘국민에게 홍보의 필요성이 있거나 공개함으로써 국가안보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상 중령이 취급하는 각종 문서도 2,3급 비밀로 지정하는 등 불합리하게 군사기밀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에 따라 군사기밀지정권자를 장성급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임(국방부).

: 동아 93.11.23., 2면; 세계 93.11.23., 22면; 서울 93.11.23., 23면; 경향 93.11.24., 3면

○ 군사법원법 개정의견

- 위헌시비가 계속되어온 군관할관의 형면제권을 대폭 축소하고 군사법원을 통폐합하는 한편 관할관이 행사하던 구속영장 발부명의를 군판사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을 개정하기로 함. 이 개정안에는 지휘관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위헌시비가 제기되어온 관할관의 확인조치제도를 보통군사법원인 1심의 경우 형면제권을 없애고 감형권만 인정하며 고등군사법원인 2심에서는 확인조치권을 없애되 전시에만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방부와 각군본부 등 4곳에 설치되어 있는 고등군사법원을 국방부에만 설치하고 사단급까지 설치되었던 보통군사법원은 군단급 이

상에 설치하도록 대폭 축소하였으며 재판부구성도 1심의 경우 군판사 1인과 심판관 2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판사 2인과 심판관 1인으로 바꾸고 2심에서는 전원 군판사로 구성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고 군검찰의 수사권을 보조하도록 검찰수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함(국방부).

- 국방부의 개정안 가운데 구속영장의 경우 군검찰관이 관할관의 승인을 받아 군판사명의로 발부토록 하고 있어 편제상 부대장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군판사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으므로 국회심의회 일부 수정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한겨레신문 해설).
- 군검찰의 영장신청시 관할관(지휘관)승인제도가 군수사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 군판사나 군검찰관의 임용과 인사에서 제도적인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군사법개혁의 기치는 바랄 수 밖에 없을 것임(경향신문 해설).

: 한국 93.10.16., 2면; 동아 93.10.16., 2면; 한겨레 93.10.16., 3면; 경향 93.10.16., 3면; 세계 93.10.16., 21면

○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

- 민통선 안이라도 취약지역은 제한보호지역으로 정하여 건축물을 신·개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범위를 축소·완화하고 행정기관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을 허가할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함(국무회의).

: 서울 93.10.28.,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호(88면)·제12호(72면) 참조

○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개정안

- ①지금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가옥의 재개축, 대수선, 소규모 농어업을 위한 토석 채취, 임목의 간벌, 축사, 창고, 재배사, 국민주택 규모의 건물 신축등은 행정관청이 관할 부대와의 협의를 거쳐 허가해왔으나 앞으로 협의절차를 생략하고, ②지금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허가시 면적, 고도, 위치등과 관련 군부대가 행사해온 건축통제권을 행정관청(시장-군수)에 대폭 이양

할 방침이며, ③군사시설보호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보호 구역내 군사시설 촬영시 벌금액을 현행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통제보호 구역(민통선이북지역)내 출입허가 위반시 벌금액을 현행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늘리고, ④통제보호구역내 주택 신·증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금까지 벌칙이 없었으나 내년부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국방부).

: 세계 93.12.3.,21면

○ 군인연금법 개정안

- 죄질에 관계없이 형량에 따라서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법이 일반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제도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①군복무 중 내란·외환등 반국가적 범죄가 아닌 폭력·절도등 일반(단순)범죄를 저질러 형의 선고를 받더라도 퇴직연금·수당등 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게 하고, ②군인이 공무상 요양비(실비기준)를 지급하며, ③이와 함께 상이연금은 1·2·3등급으로 구분하여 각각 보수년액의 80%, 60%, 40%를 지급해오던 것을 7개등급으로 세분화하여 등급에 따른 급여액의 차이를 줄이도록 함. 이밖에 생활안정자금 마련을 위하여 최초 퇴직연금 지급때 1년분의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현행규정은 '특혜'라는 지적등에 따라 이번안에서는 삭제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함(국방부).

: 서울, 93.11.24.,22면; 경향, 93.11.24.,2면

○ 군인연금법시행령 개정안

- 군복무중 사망 또는 부상등으로 전역한 경우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을 현실화하는 것을 골자로 「군인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①사망보상금은 현재 항공군무를 제외한 사망신고자에게 보수월액의 12배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을 18배로 올리기로 하고, ②군복무중 부상으로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에게 지급하는 장애보상금은 1~3등급의 장애등급을 1~9등급으로 세분하고 보수월액의 6~12배로 규정된 것을 4~12배로 현실화하여 사실상 보상액을 높여주기로 함(국방부·보훈처).

: 한국, 93.11.22.,30면

○ 군인사법 개정안

- ①대통령이 국방장관을 통해 군통수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형식적이었던 국방장관의 인사제청권을 보다 강화하고, ②각군 참모총장의 인사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금까지 장성급심사때 각군총장의 추천에 대해 제청권만 행사해왔던 장관의 권한을 강화하여 각군에서 올라온 진급추천자들을 장관직속의 제총심의위원회에서 재심사토록하며, ③장성·소령·위관급과 중사이하 하사관의 정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군의 중견인 중령과 대령의 정년을 현행 49~53세에서 53~56세로 3~4년 연장하고, 이등·일등 상사및 준사관에 대해서는 현행 50~53세를 53~55세로 2~3년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마련함(국방부).

: 세계 93.11.25.,21면; 경향 93.11.25.,2면; 경향, 93.12.2.,23면; 한겨레 93.12. 10.,2면

○ 군형법 개정의견

- 유사법률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법정형을 조정하여 군무이탈죄의 경우 현행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낮추고 초병이 군무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되는 초령위반죄는 1년 이하의 징역에서 2년 이하로 늘림(국방부).

: 한국 93.10.16.,2면; 동아 93.10.16.,2면

○ 병역법 개정의견

- 지난 '90년에 폐지되었던 예·체능특기자들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부활하여 '95년부터 현역입영대신 해당분야에서 3년간 활동하면 병역의무 복무를 마치도록 하기 위하여 「병역법」을 개정할 방침임(병무청·국방부).
- 개정안은 방위병제도의 폐지에 따라 현역병이 증가한다는 점과 공익봉사 복무요원에게는 병영에서가 아니라 사회에서 국방의무를 치르는 '특혜'를 부여하기 때문에 선발과정에서 부정비리가 개입될 수 있음(나병선·장준익, 민주당 위원).

: 동아 93.11.2.,29면; 동아 93.12.10.,6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7호(59면)·제8호(70~71면) 참조

○ 병역법시행령 개정의견

-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학생들은 이미 병역의무를 치렀으며, 이들의 희생이 민간정부의 출범을 앞당기게 된 것이므로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징역 1년 또는 집행유예 2년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병역의무를 면제해주도록 청원할 방침임(국립대학 총장협의회).
- 법령개정을 통한 문제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전체 수행기간이 2년 이상인 13명에 대해서만 구제를 검토하겠음(국방부, 병무청).

: 한겨레 93.12.1.,18면

○ 여권법시행규칙 개정안

- 여권을 분실할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분실신고를 외무부장관 또는 수입지방청장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외무부).

: 서울, 93.11.14.,2면

○ 참전군인등에관한지원법률(가칭) 제정의견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군인들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①위령탑 건립, 참전성과등의 교과서반영, 해외참전의 날 제정등 참전군인들의 명예 선양사업을 벌이고, ② 참전지원법의 혜택대상자는 6·25전쟁당시의 참전군인,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여한 경찰, 민간인등과 월남전참전군인들로 하며, ③정부출연금으로 '참전군인지원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함(국가보훈처).

: 경향 93.11.14.,2면

◎ 內務 · 地方行政

○ 감사원법 개정의견

- 비위공직자의 재산조사는 영장이 필요없으며,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도 조사범위 등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이회창 감사원장).
- 비위공직자의 예금계좌를 영장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 비위공직자에 대한 예금계좌 조사조항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개정에 반영하기로 함(감사원).

: 세계 93.10.14.,2면; 한겨레 93.11.7.,1면; 서울 93.11.7.,1면; 국민
93.11.8.,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호(84면) · 제11호(74~76면) · 제12호(74면) 참
조

○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 개정의견

- 전직 공무원, 군출신이 퇴직후 정부투자기관 등의 임직원으로 재취업하여 월급외에 고액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계속 지급받는 데에서 생기는 특혜성 차별화가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전직 공무원 · 군출신 인사가 정부투자기관 등의 임직원이 될 경우 재임기간 동안 연금지급을 중단하도록 하거나 50%만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법의 개정을 추진중임(정부).

: 조선 93.10.20.,2면

○ 공무원임용령 개정의견

- 그동안 일반직 9급 및 기능직 10등급 공무원만이 8년근속하면 1단계씩 자동 승진하는 근속승진제의 혜택을 받아왔으나, 내년부터는 일반직 8급이 9년간 근속하면 7급으로 자동승진하는 등 공무원 근속승진제를 대폭 확대하고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와 사기양양을 위하여 앞으로도 복수직급제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행정쇄신위원회)

: 세계 93.11.20.,1면

○ 교민의 재산권보호관련 입법의견

- 교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내국인의 토지양도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속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관계법을 개정할 방침임(홍순영 외무부차관).

: 한겨레 93.10.30.,4면

○ 교원복무규정 제정의견

- 교직원들의 복무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교원복무규정」으로 단일 법령화할 계획이며, 시도별 개별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임. 이러한 「교원복무규정」에는 정치집단

행동 금지, 성신품위유지의무, 노동운동금지 등의 규정이 포함될 것이며, 이와 함께 교직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주동하거나 배후조종하는 교사에 대하여는 엄중대처하고 경위에 따라 사법적 대응방안도 강구할 것임 (교육부)

: 조선 93.11.12.,31면; 한국 93.11.12.,30면; 서울 93.11.12.,22면; 조선 93.11.13.,3면

○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의견

- 안기부가 정보기관의 고유권한은 유지하되 권한남용의 소지를 없애는 데 주안점을 두고 ①국회내에 정보위원회를 신설하여 안기부의 일반업무 및 예산에 대한 국회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②국내보안정보 업무에 방첩정보, 대테러정보 및 국제범죄조직 정보를 추가하고, ③인신구속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며, ④정치관여죄의 신설 ⑤관계기관대책회의의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정부).

- 안기부의 수사권·정보조정권 등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국회정보위가 안기부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없게 한 정부안은 새로운 반민주악법이므로 국회가 안기부의 업무를 철저히 감독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박상천 민주당의원).

: 한국 93.10.30.,2면; 서울 93.10.30.,3면; 동아 93.11.5.,2면; 한겨레 93.11.6.,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68면)·제9호(87면)·제10호(73면)·제11호(76~77면)·제12호(74~75면) 참조

○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의견

-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2항에 대하여 “이 조항은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들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림에 따라, 현행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2항을 개정하여 국가공무원법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현업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철도청·체신부·국립의료원 종사자들에 대하여는 파업등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줄 예정임.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국가공무원법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단체행동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며, 정부투자·출연기관들의 경우에는 예산의 제약과 사업의 공공성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공부문노사관계특별법(가칭)」의 제정 등을 통하여 노동3권중 일부를 제한할 방침임 (노동부)

: 한겨레 93.12.3.,18면

○ 민원사무기본법(가칭) 제정안

- 총리실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반국민의 각종 고충민원을 신속·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읍부즈만제도’를 도입하고,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급행정기관장은 반드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정하여 일반에 공표토록 하며, 정부행정기관이 각종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에는 반드시 소관부처 및 관계전문가에 의한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특히 관계부처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소속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규제사전심사제’를 골자로 하여 「민원사무기본법(가칭)」 제정안을 의결함(국무회의).

: 서울 93.10.28.,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1호(78면)·제12호(76~77면) 참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안

-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3세이상 어린이의 1인당 보육실 최소면적을 0.8평에서 0.6평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개정안에 따르면 보육실, 사무실, 양호실 등을 포함한 전체 교육시설면적은 영유아 1인당 1.3평에서 1.1평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양호실, 사무실 등 부대시설의 설치요건도 완화하여 영유아 30명 이상에서 40명 이상의 보육시설에 설치하도록 하며, 사무원, 관리원 등 관리전담직원을 현행 영유아 50명이상에서 60명 이상의 시설에서만 의무적으로 두도록 함. 이밖에 보육원 설치인가를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10종에서 6종으로, 가정보육시설의 비치장부를 13종에서 4종으로 대폭 감축하고, 각종 신청서의 날인제도를 서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보사부)

: 조선 93.11.16.,30면; 세계 93.11.16.,21면; 서울 93.11.16.,22면; 경향 93.11.16.,22면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

- 4명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는 사업장규모를 현행 1천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5천명이상의 사업장으로, 2명이상 두도록 되어 있는 보건관리자도 사업장 규모를 현행 3천명이상에서 5천명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도 산업안전기사 1급을 2급으로 완화하며, 지하철을 제외한 육상운수업은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 (노동부)

: 서울 93.11.23.,22면; 세계 93.11.23.,21면

○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의견

- 현행 인감증명제도가 일반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신용사회로 나아가는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인감제도를 개선하여 2000년 이후에는 인감제도를 폐지하기로 함. ①1단계로 내년부터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인감증명의 용도지정과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신분확인등에 따르는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며, ②'96년부터는 현행 도장확인절차를 통하여 거래관계를 직접 증명하는 방식으로부터 단순히 인감등록사실과 인감의 모양만을 알려주는 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함(행정쇄신위원회).

: 서울 93.11.27.,2면; 한겨레 93.11.27.,2면

○ 정부조직법 개정의견

- 사회복지와 식품의약품관리를 모두 보사부가 관장하고 있는데 이제 이를 분리할 때가 되었으므로, 독립적인 식품의약품관리기구를 설립하고 보사부·내무부·총무처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복지정책기능을 일원화하며 식품·의약품 문제는 독립적인 전문기구를 설립하여야 함(김찬우 민자당의원).

: 국민 93.11.3.,4면; 동아 93.11.4.,4면; 한국 93.11.4.,5면; 세계 93.11.4.,5면

○ 지방자치법 개정의견

-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①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및 존치, 분할 및 통합 또

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자치단체의 중요결정사항 등에 대하여는 주민투표제를 도입하고, ②현재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읍·면·동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시켜 신분을 보장하기로 하고, ③자치단체장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자치단체끼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주무장관이 행정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이행명령제를 도입하고, ④주민 감사제도를 도입하여 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이 위법·부당하게 사무를 집행할 경우에는 선거권자의 5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자치구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⑤주민투표제의 구체적인 투표의 대상, 발의자 등은 따로 「주민투표법(가칭)」을 제정하여 규정하도록 할 방침임(국회정치특위)

-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졸속입법이 될 우려가 크므로 ①유급보좌관제 도입, ②사무처직원 임면권, ③개인후원회 결성보장 등이 요구됨(전국 시도의회 의원대표).

: 동아 93.11.20.,29면; 조선 93.12.10.,2면

○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행정규제 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앞으로 신설·강화되는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며, 개선작업을 체계화하여 내년부터 9개 업종과 11개 기능별로 과제를 나누어 제도개선은 물론 일선기관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나아가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확대 실시할 계획임(행정쇄신위원회).

: 조선 93.11.24.,2면; 한겨레 93.11.26.,2면

◎ 社會·文化·教育

○ 가정의례에관한법을 개정의견

- 장의업허가제를 폐지하여 자유업으로 전환하여 누구나 장의용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식장영업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며, 보사부고시로 정하던 예식장의 임대료나 수수료를 신고제로 바꾸어 예식장측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하도록 할 방침임. 또한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종교기관, 의료기관, 학교, 기업체, 사회단체 등이 무료나 실

비로 예식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없이 예식장영업을 하거나 폐쇄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기존 예식영업의 허가제와 요금고시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을 개정하기로 함. 이와 아울러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하며 너무 가격이 올라갈 경우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동시행령에 신설하기로 함(보사부).

- 허가받은 결혼예식장은 당국으로부터 각종 규제를 받음은 물론 요금도 12년 전부터 고시가격으로 묶여 있어 예식장영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으나, 현재 예식건수의 50%를 점하고 있는 무허가 업자들은 현행법상 최고 2백만원의 벌금만 납부하면 여타의 제재없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임. 더욱이 이들 무허가업자들은 대형빌딩의 스카이라운지 등을 음식점으로 허가받아 무허가예식장이나 무료예식장으로 운영함으로써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당국의 제재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결혼예식업연 사무국장).

: 서울 93.10.15., 2면; 세계 93.11.8., 8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74면) · 제8호(75면) · 제9호(91~92면) · 제10호(78면) 참조

○ 공휴일축소관련 입법의견

- 6공시절 우리는 노동법을 개정하여 근무시간을 주당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축소시켰는데 이는 경제발전이나 수출증대를 위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으로 노동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 종신고용제보장을 전제로 한 노동법, 다시 말하여 선진국 노동법을 능가하는 '사회보장적 노동법'으로 개정된 것이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따라서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환원하고 또 너무 많은 휴일을 줄여 식목일·개천절의 공휴일화는 폐지하고 신·구정 2중과세도 폐지하는 동시에 각종 선거일 등의 임시공휴일화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김동기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 동아 93.10.19.,5면

○ 교육법시행령 개정의견

- 그동안 평균 1개월 이상이 소요되던 중학교입학 추천관리위원회의 학교배정 절차를 폐지하여 해당지역 교육장이 신청서류접수 후 1주일 이내에 반드시 전학 및 편·입학대상 학교를 배정하도록 하고, 특히 전가족이 타학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해당학군내 학교의 정원의 5% 범위내에서 전학 및 편·입학을 허용하도록 하며, 해외교포의 국내대학 입학특례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국무회의).

- 대학들이 입학생선발에서 자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선발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는 기존 「교육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입학생 선발에서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선택권과 대학의 선발권, 고교의 평가권을 보호하여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이성호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 세계 93.10.30.,23면; 경향 93.10.30.,22면; 서울 93.10.30.,22면; 세계 93.11.5., 22면; 서울 93.11.5.,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76~78면) · 제10호(82~83면) · 제11호(81면) · 제12호(78면) 참조

○ 고용보험법(가칭) 제정안

- 근로자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95년 7월부터 급격한 경기변동·산업구조 조정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실직후 1개월에서 7개월까지 취업당시급여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실업급여대상자를 실직전 1년 6개월의 기간동안 1년 이상 고용되어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실직할 경우 실직 후 최고 7개월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고용보험법(가칭)」 제정안을 의결함(국무회의).

: 세계 93.10.22.,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74면) · 제8호(76면) · 제10호(84~85면) · 제11호(79면) · 제12호(77면) 참조

○ 국가기록물보존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국가기록문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기록물 보존청사를 별도로 건립하고 국가기록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30만 2천권에 달하는 정부기록보존소의 보관문서에 대한 정리작업을 실시하여 내년중 동학관련문건 및 항일독립운동사료 등에 대한 해제집 및 영인본을 발간하기로 함. 특히 전국적인 망을 갖춘 기록보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록보존소를 차관급기구로 확대개편하는 방안과 소장을 1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며 현행의 '사무관리규정'을 포괄하는 「국가기록물보존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하여 현행 각 부처에 준영구(10년 이상) 또는 영구문서를 작성하여 6년 후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년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과 보존기간 이후에도 넘기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임(정부).

: 세계 93.10.31.,2면

○ 귀순북한동포보호법시행령 제정의견

- 최근 북한에서의 귀순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남북통일이 현실화될 경우 통독을 앞두고 동독난민이 대거 서독으로 밀려온 경우처럼 북한난민이 대량으로 월남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①귀순자는 보사부에 보호신청을 내면 제공한 북한정보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받게 하고, ②특히 지금까지 무조건 제공해오던 주택도 사안에 따라 무상 또는 임대주택을 지원하며 취업도 지금까지 가족 전체에 대하여 알선하던 것을 본인위주로 하되 가족은 생활보호대상자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기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귀순북한동포보호법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임(보사부)

: 경향 93.11.12.,22면

○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의견

- 노동자 구강검진 대상 사업장에는 설탕가공업과 일부 산취금업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사업장은 구강내 직업병을 일으키는 대표적 직종이나 이들 작업장에서 흔히 생기는 '설탕에 의한 치아우식증'과 '치아부식증'은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직업병에 포함시켜 관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법

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설탕에 의한 치아우식증은 제빵공장이나 제과업체, 제당회사에서 치아에 설탕이 쌓여 생기는 병으로, 밀가루를 쓰는 전문업체에서도 더러 발병하는데, 이러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공기중에 떠돌아다니는 설탕가루가 숨쉬는 사이에 입안에 들어가 남거나,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맛을 보면서 설탕이 입속에 남아 일반인보다 충치가 많이 생겨 고생을 하고 있음. 또한 치아부식증은 황산·염산·질산 등 각종 산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축전지공장, 각종 금속부식공장, 산세척공장에서 많이 발생하며 구연산을 다루는 음료수공장도 위험작업장의 범주에 드는데 공기중에 뿌옇게 떠다니는 산알갱이가 치아표면에 달라붙어 치아를 썩게 만드는 것으로서 이 직업성 치아부식증은 먼저 공기 중에 쉽게 노출되는 앞니에 발생하여 주로 앞면 중간부분에서 수평선 형태로 파이기 시작하는데, 이 병은 기계적 마모와는 달리 부식된 끝이 둥근 것이 특징임. 독일·덴마크·핀란드 등에서는 '70년대부터 치아우식증을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산업보건진료제도 등을 도입하여 이 직업질환의 조기발견과 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이미 1940년대부터 산업재해평의회를 통하여 치료비를 보상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직업성 유무논란을 넘어 이 병들을 일으키는 위험유발요소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지 오래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근로기준법시행령」에 명기된 '업무상 질병'에 당에 의한 치아우식증과 치아부식증을 서둘러 포함시켜 노동자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증진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본래취지에 맞는 제도개선을 이루어야 할 것임(한영철 치과 의사).

: 한겨레 93.10.12., 10면

○ 근로자파견사업의규제및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이 법안이 기업의 일시적 인력수급이 원활해지도록 하고 10만명이 넘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나치게 규제적이고 근로자보호 위주로 되어 있음. 특히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때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경영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여야 하고, 근로자파견허용업종도 전업종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임(경제 5단체장회의).

: 한겨레 93.11.6.,7면; 경향 93.12.2.,13면; 국민 93.12.2.,17면; 한겨레 93.12.2.,10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75~76면) · 제8호(78면) · 제10호(85면) · 제11호(81~83면) · 제12호(78~79면) 참조

○ 문화재보호법 개정의견

- 현행 매장문화재 관리상황은 매장문화재의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과 도굴로 인한 대규모 파괴가 잇따르고 있는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하여 있는데, 이는 행정 · 연구인력 등 전문인력의 부족, 당국의 직무유기적 태도, 관계법규의 미비, 예산편성 및 집행우선순위의 잘못, 발굴전담조직의 부재등이 그 원인임. 이의 개선을 위하여는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제도와 절차를 정비하여 문화재 행정의 체계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과제임. 또한 현행 제도는 매장문화재의 보존 · 관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사시행자 또는 땅주인이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 대구 시지동 택지개발지구 대규모 유적파괴사건 등의 '고의적 파괴'가 잇따르고 있으므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사유재산권보장을 명문화하여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발굴 등 매장문화재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비에 대한 국가부담원칙이 확립되어야 함. 이와 함께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도굴은 물론 시지동사태와 같은 사적가지정 이전의 파괴행위에 대하여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이선복 서울대교수,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매장문화재 관리의 현황과 과제', 1993.11.6).

: 경향 93.11.7.,1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82면) · 제11호(84~85면) · 제12호(80면) 참조

○ 민주시민교육원설립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모두가 동참하는 개혁을 위하여 야당이 동의할 경우 내년초쯤 의원입법으로 「민주시민교육원설립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하여 이 법에 따라 군사문화와 권위주의의식구조 청산 및 극복, 새로운 국가통합 이념의 정립, 참여민주주의의식의 생활화, 미래지향적 시민의식의 정착 등을 목적으로 여야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주시민교육원(가칭)'을 설립하고 여야정치인과 학계 ·

법조계·언론계·사회단체인사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대회를 갖고 정식발족시킬 계획임(민자당).

: 동아 93.11.10., 2면

○ 방송법 개정의견

- 프로그램공급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한국방송영상(주)의 조직 및 기능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임(김기도 민자당의원).
-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위원회가 유일한 고유업무로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데도 군사정권이 KBS와 MBC에 대한 인사권·민방면허부여권·방송내용에 대한 심의권을 방송에 대한 간접통제의 수단으로 삼아 방송심의기관의 행정부종속을 부채질하고, 개별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전체적인 편성의 균형이나 채널간 보완관계 등 거시적 심의는 없었으며, 심의기준 위반의 책임도 대개 실무자에 국한되어 있음. 또한 일부사전검열조항은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모순을 안고 있으므로, 법 개정시 금지행위를 최소한으로 명확히 하되, 위반시에는 정정·취소·사과 등 방송을 통한 시정 뿐 아니라 부당이익환수 등 벌금형을 확대하고 면허단축·면허일시정지·면허취소 등 무겁고 확실한 벌칙을 과하는 방향으로 「방송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임. 또한 다채널이 실현되고 상업방송이 성장하면서 프로그램의 질문제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관심사로 부상되고 문화적 주권수호와 방송의 역기능을 막기 위한 입법이 계속되고 있는 추세인 바, 방송프로그램의 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①심의기관의 한계를 법으로 명확히 제한하고, ②민방의 경우 지나친 경쟁을 막기 위하여 과잉수입을 국고 또는 공익자금으로 환수하여야 하며, ③방송국면허발급 또는 갱신시 방송구역내 시청자도 이해당사자로 인정하는 등의 방향으로 「방송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임(윤병일 방송위원회 연구위원, 한국방송비평회 주최 『더 나은 방송을 위한 기반조성』 세미나, 1993.10.16).

: 한국 93.10.16., 5면; 한국 93.10.16., 15면

○ 사행행위등규제법 개정의견

- 슬롯머신(투전기)과 카지노(기계식구슬치기)영업을 폐지하기 위하여 내무부가 제출한 「사행행위등규제법」 개정안은 관광객 유치측면에서 폐지방침

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의결을 보류함(국무회의).

- 국무회의 개정안의결유보 후 슬롯머신업종을 완전 폐지한 뒤 특급호텔에 한해서만 영업을 허가하는 방침을 신중하게 검토하였으나 예상되는 기존업소들의 반발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세계적으로 슬롯머신업소 영업을 허용하는 나라가 극히 적을 뿐 아니라 법개정의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현행 「사행행위등규제법」을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가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행행위영업허가조항 중 투전기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업소의 신설·재허가를 불허하여 '96년까지 슬롯머신업종을 완전히 폐지하는 등의 당초의 원안대로 다음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함(내무부).

: 조선 93.10.22.,2면; 동아 93.10.22.,2면; 한국 93.10.22.,2면; 한겨레 93.10.22., 1면; 세계 93.10.22.,23면; 서울 93.10.22.,2면; 한국 93.10.23.,23면; 세계 93. 10.24.,7면; 한겨레 93.10.28.,2면; 세계 93.10.28.,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82~83면)

○ 장애인교육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지난 7월 정부가 장애인 의무교육을 내용으로 한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9월 국회에 제출한 최종안은 입법예고때 발표된 내용과는 달리 '의무교육'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장애인들을 기만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음. 장애인 의무교육권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24만 3천 5백 56명의 장애인 가운데 불과 20.2%만이 교육을 받고 있는 현행 특수교육의 현실을 개선하고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국민의 기본권을 장애인도 보장받게 하기 위하여는, ①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을 유예하고 있는 교육법 제98조를 삭제하고, ②초·중등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하며, ③장애인 교육권확보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임(장애인교육원 확보를 위한 범국민 대책회의 공동성명, 1993.11.6).

: 세계 93.11.8.,17면; 서울 93.11.16.,17면

○ 장애인복지제도개선관련 입법의견

- 장애인의 사회참여지원을 위하여 ①모든 공공시설, 민간공공서비스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②장애인복지수당제도를 신설하여 1~3급의 중증장애인에겐 장애인 복지수당을 지급하며, ③3백병상 이상 종합병원내 재활의학과설치를 의무화하고, ④자동차 1종면허의 허용과 청력제한규정을 완화하여야 함. 취업기회확대를 위하여는 ①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중증 1인채용시 2인채용 인정제, 보조금고용제, 재활시설 연계고용제, 특정장애인 우선고용제를 도입하고, ②장애인 고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 고용주간을 설정하여야 함.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①국립특수교육원의 설치·운영, ②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추진, ③학교시설을 통한 장애아동 교육기회의 확대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취업기회 및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관계법 및 제도를 개선하고, 곱추·난쟁이·자폐증·신부전증환자 등을 장애인에 포함시켜 관련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재활시설과 종합복지관·체육관·재활의료센터 등을 증설하는 등 복지여건을 향상시켜야 함(행정쇄신위원회).

: 국민 93.10.29., 2면; 조선 93.10.30., 2면; 한겨레 93.10.30., 2면; 세계 93.10.30., 2면

○ 종교법인법(가칭) 제정의견

- 현재 각 종교의 종단들은 거의 대부분 재단법인(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관계부처에 재산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선 사찰이나 교회 등의 산하 종교단체들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 이므로 모든 종교단체에 사단 및 재단의 성격을 함께 보유한 혼합법인 형태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종교법인법(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박종웅 민 자당의원).
- 종교문제는 국가에서 지시·통제하는 형식이 되어서는 곤란하지만 종교계가 자체적으로 개혁에 동참한다면 이를 도와주고 주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이지 정부가 나서서 종교계를 개혁하기는 어려운 입장임(문화체육부).
- 종교와 종교단체가 그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는 국가권력이나 행정관청의 통제를 벗어나 자율적 형태의 종교법인이 되어야 하므로 「종교법인법(가

칭)」의 제정이 필요함(손성 동국대교수, 제10대 조계종중앙종회 종우회주최 '종우회 정책토론회').

: 세계 93.10.20.,1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2호(82면) 참조

○ 통신비밀보호법(가칭) 제정안

- 우편검열과 전화도청은 물론 식사모임 등 공개되지 않은 사인간의 대화도 법관의 영장없이 는 도청할 수 없도록 하고, 도청허용절차에 있어 범죄수사의 경우 지방법원 또는 지원판사의 영장, 국가안보 목적의 정보수집시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영장, 외국기관 및 외국인간의 대화 도청시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국가기관사인단체 누구든지 도청기기를 소지하려면 반드시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기존 소지자는 법률 공포 후 3개월내에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함 (국회 정치관계심의특위)

: 조선 93.12.1.,2면; 경향 93.12.1.,2면; 세계 93.12.1.,2면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

- 학원의 설립기준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민학생의 학원수강도 교육감과 시·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과목에 한하여 일정기간 동안만 수강할 수 있도록 하며 과외교습을 하는 대학생의 신고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함(교육부).
- 학원시장개방(95년)과 함께 불어다칠 학원에서의 부분별한 유아의 외국어와 유치원과목교육을 막기 위하여, 사설학원에서 유치원학령의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외국어교습을 전면 금지하고, 원장이 되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자격없이 각종 학원의 운영을 허용하던 것을 금후 신설될 학원의 원장은 강사경험이 있거나 사회교육전문요원 또는 교사자격증소지자로 제한키로 하며, 사설학원에서도 유치원 교과과정(신체·언어·인지·정서·사회성 발달)은 물론 외국어 과외까지 금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임(보사부).

: 동아 93.10.26.,31면; 한국 93.11.15.,31면; 경향 93.12.9.,1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0호(83~84면) · 제11호(86면) · 제12호(82~83면) 참조

◎ 産業 · 經濟

○ 국세기본법 개정의견

- 납세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예정·납부했다가 1~2년뒤의 확정과세시 최종과세액이 감소하거나 비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납부액을 환급받을 경우 법정이자를 계산해주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재무부).

: 한국 93.11.9.,9면

○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의견

- 현행 「국유재산법시행령」은 매각을 위한 입찰이 유찰되어도 한번 정한 예정가격을 바꿀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등의 정부소유주식매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매각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개정하여, 기금·연금 등을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고 정부가 지명경쟁과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에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관리·운용하는 법인과 기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조합·공공단체'를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현재는 정부가 상장주식을 매각할 때 매각예정가를 '실거래가'로만 하게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정원의 '감정가'도 참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정가격을 현실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임(재무부).

: 한겨레 93.11.4.,6면; 경향 93.11.4.,7면; 세계 93.11.4.,6면

○ 금융실명제관련 입법의견

- 실명제 실시여부가 미리 공론화될 경우 주식투매나 대규모예금인출 등의 위기가 야기될 수 있었으며 가·차명계좌의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끝난 후부터 실명제 정착여부를 주시해야 하기 때문에 긴급명령의 법적 요건이었던 위기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므로 실명제 정착까지는 상당

한 기간이 필요하며 실명제 취지가 왜곡되거나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대체입법의 제정은 당분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안임(황길수 법제처장).

- 실명제 긴급명령은 재정·경제상 위기 등 발동요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동되어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긴급명령이 국무회의의 의결과 국회동의를 거치지 않고 두차례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불가한 것이므로 대체입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임(이원형 민주당의원).
- 기존의 가·차명 금융자산 중 위장실명화한 금융자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무화하고 국회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정감사 및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금융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위장실명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명거래 의무를 금융기관에만 한정하던 긴급명령과는 달리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법인 등 모든 기관으로 확대하고 위장실명거래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여야 할 것임(민주당).

: 경향 93.10.13., 4면; 세계 93.10.13., 5면; 한겨레 93.10.26., 2면; 한국 93.10.30.,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90면)·제10호(93~94면)·제11호(87~88면)·제12호(84~85면) 참조

○ 부동산실명제관련 입법의견

- 부동산 실명제의 도입은 법률관행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부동산투기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법무부·건설부·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부동산실명제의 도입을 검토할 방침임(김태영 경제기획원 차관보).
- 명의신탁은 외형적으로 공부상의 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법률행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조작하는 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명백한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제를 폐지하여야 함. 특히 명의신탁은 일제가 민족정체성과 자존의 경제적 토대였던 중층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하여 만든 규정인데 아직까지도 법원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실정인 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려 지금까지 명의신탁에 대한 판례태도를 번복하고 무효를 선언하여야 할 것임. 또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탈세목적의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명의신탁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실효가 의심스러우므로, 대부분 부동산투기나 재산은닉 등 탈법수단으로 악용되는 명의신탁을 전면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임(윤철홍 숭실대학교수, 경실련 주최 『부동산실명제 도입에 관한 공청회』, 1993.10.30).

- 명의신탁금지는 오히려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경제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아 부동산거래시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거나 계약서공증제를 도입하여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부동산실명화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안상수 변호사, 경실련 주최 『부동산실명제 도입에 관한 공청회』, 1993.10.30).

- '90년에 제정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조세포탈,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소유권 등 권리변동 등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 등에는 명의신탁을 금지한다고 못박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실명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차명을 그대로 실명화하여 제도금융권 안팎에 자리잡고 있는 검은돈의 규모가 30조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96년 금융자산의 종합과세가 실시되기 이전에 실물투자로의 전환을 모색하여 부동산투기로 몰릴 우려가 있으므로 부동산 가명에 악용되는 명의신탁제도를 폐지하고 실명화를 명기하여야 할 것임(한국일보사설).

: 조선 93.10.21.,10면; 한국 93.10.21.,1면; 한겨레 93.10.21.,2면; 세계 93.10.21.,7면; 서울 93.10.21.,9면; 국민 93.10.21.,6면; 한국 93.10.22.,3면; 국민 93.10.30.,17면; 국민 93.10.30.,17면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견

- 화재·폭발·누출 등의 우려가 높은 설비를 갖추고 있는 사업장에 과학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형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유해·위험물질 등의 설비를 갖춘 사업장(기계·전기·화공·건설·산업위생 등 5개 분야)은, 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획득하고 소정의 연수를 이수한 뒤 시험에 합격한 산업안전·위생건설턴트의 지도를 받아 의무적으로 안전성평가, 사고발생시 예상피해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사고발생시 비상조치계획 등을 미리 수립하도록 하는 등 사업주가 산업안전

· 위생에 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거쳐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산업안전·위생 컨설턴트제'를 도입하기로 함(노동부).

: 경향 93.10.19., 22면

○ 상품권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개정안

- 상품권의 1장당 발행한도액을 금액표시상품권은 10만원, 물품 및 용역표시상품권은 각각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발행자와 고객간의 상품권 사용후 잔액에 대한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표시금액의 20% 이내의 범위에서는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도록 함. 또한 상품권의 발행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다만 발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금으로 법원에 맡기거나 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으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재무부).

: 한국 93.12.7., 7면; 경향 93.12.8., 6면

○ 세무사법 개정의견

- 현행 세무사법은 기업의 회계감사업무를 전문영역으로 삼고 있는 공인회계사에서 세법지식에 대한 충분한 검증없이 자동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세무사에게 부과되어 있는 교육과 세무사회의 감독을 받을 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세무대리질서의 문란 등 적지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증권당국 이외에 세무당국이나 세무사회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있음. 따라서 공인회계사가 세무사를 전업(세무대리업무 90% 이상을 하는 경우)할 때에만 세무사회에 가입하도록 한 세무사법 및 동시행령을 개정하여 세무사 전업비율을 없애고 세무대리업무를 하는 공인회계사는 자동적으로 세무사회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한국세무사회).

: 경향 93.12.7., 6면; 세계 93.12.7., 8면

○ 신용정보법(가칭) 제정의견

- 신용정보의 수용증가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신용조사업무 및 정보유통 등의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기 위하여 내년중 새로운 법제정을 추진할 방침임. 현재의 「신용조사법」을 대체하게 될 새법에는 신용조사기관의 설립기준, 조사업무범위, 유통정보, 감독 등에 관한 규정과 함께 조사대

상자의 소비자권리보호규정을 넣을 예정임(재무부).

: 경향 93.11.21.,6면; 한겨레 93.11.21.,7면

○ 예산회계법 개정의견

- 정부의 대형공사를 70% 미만으로 수주하는 업체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PQ제(사전자격심사제)를 사실상 부인하는 것이므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이 보다 공사의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즉, 사전심사제를 통하여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70% 미만 낙찰자를 조사하여 처벌하겠다는 것은 PQ제도를 유명무실화한다는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에 참가한 경쟁자 중 여기에서 탈락한 3개업체 이상이 낙찰금액이 부당하다고 신고했을 경우 '심사대상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은 예정가의 70% 이상선에서 업체간 담합을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저가입찰행위를 판정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기술자문위원회'를 위촉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서 현행 입찰제도 관행상 사전자격심사제에서 입찰회사의 기술능력 및 회사규모·시공경험 등이 모두 걸러지는데 또다시 이들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업무를 맡기는 것은 업무의 중복만을 가져올 것임(대한건설협회).

: 세계 93.11.9.,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호(101면)·제12호(88면) 참조

○ 외자도입법 폐지의견

-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가절차 등을 규정한 외자도입법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폐지하는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나가기로 하고 내년 중 천안·광주 등에 2개의 외국인투자지역(FIZ)을 설치하여 낮은 임대료로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하기로 함(경제기획원).

: 세계 93.11.25.,6면

○ UR관련 입법의견

- UR협정이 특정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각국의 정부보조금 지급과 차별적 금융지원을 금하고 있어 국내 관련제도 및 법령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섬유, 산업피해구제제도, 수출자율규제, 원산지규정 등 12개 분

야를 우선정비가 필요한 과제로 선정하여 관련제도 및 법령의 개편과 보완을 서두르기로 함. 섬유분야는 쿼터철폐에 대비하여 섬유산업구조개선 7개년계획을 보완하고 국별양자협정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경우 쿼터운영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반덤핑관세 운용절차를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규정에 맞추고 UR협정안이 금하고 있는 수출자율규제를 없애기 위하여 대외무역법 개정을 서두르기로 하며, 이밖에 수입허가절차를 명료화하고 단계를 줄이기로 하는 한편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축소도 검토하기로 함. 또한 정부조달협정, 기술장벽,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현행 제도 및 법령의 개편과 이에 따른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함 (상공자원부).

: 세계 93.12.7.,7면; 서울 93.12.7.,9면; 경향 93.12.7.,7면

○ 유통단지개발촉진법(가칭) 제정의견

- 낙후된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이 트럭터미널·집배송센터·창고·화물적치장 등이 입주하는 대규모 복합유통단지 조성에 참여할 경우 부지를 싼 값에 공급하고 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 등 공업단지 조성에 준하는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임. 구체적으로는 유통산업근대화 촉진법, 도·소매업진흥법, 화물유통촉진법 등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유통시설관련 규정을 새로운 법으로 통폐합하여 유통단지 개발을 위한 기본법으로 삼고,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유통시설입지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법률체계를 시정하여 프랑스·독일·일본 등 선진국처럼 정부가 유통시설 전용입지를 지정하며 용도변경 등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여 공업단지 개발과 비슷한 수준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임(경제기획원).

: 조선 93.11.17.,11면

○ 자산재평가법 폐지의견

- 현행 「자산재평가법」은 자산재평가 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본에 전입되어 주주들에게 무상증자됨으로써 결국 회사소유 부동산 상승가액이 세금도 내지 않고 주주들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재벌에게 금융

여신이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자산재평가법」을 폐지하여야 함(박태영 민주당의원).

: 한겨레 93.10.23., 4면

○ 저작권법 개정안

-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보호와 저작물의 대여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대여권을 명시하고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현행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며 저작권위탁관리업 중 대리·중개업자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함(문화체육부).
- 문화체육부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교과 출판업자는 제작 과정에서 교과서에 쓴 글의 저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교과서 값의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하여 교과서출판사들은 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교과서를 줄속으로 제작하게 될 우려가 있음(교육부).
- 문화체육부의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교과서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경우 그 취지를 저작자에 통지하여야 한다(제23조 1항)’는 조항은 교과서용도서의 편찬·발간시 다양한 내용 게재에 지장을 주어 책 내용을 부실화하고, 국내외 저작자 수천명에게 사전통지할 경우 번잡성과 시기상의 지연으로 교과용도서의 적기공급이 불가능하여 저작자의 권익만을 보호할 뿐 저작물 이용자에게는 불편만 주는 조치임. 또한 ‘교육부장관의 검·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는 인용, 복제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도 보상금지급이 의무화되면 교과서발간비용 증가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며, 외국인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자 소재불명 등으로 보상금액·지급방법 등에 대한 타협이 불가능하고, 국정교과서에 대하여는 보상금지급을 면제해주면서 민간출판업자들이 출간하는 검인정교과서에만 보상금지급을 명문화한 것은 법의 공정성·형평성을 상실한 것임. 특히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유관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는 등 입법정책 홍보가 전혀 없었으므로 개정안을 다시 마련하여야 할 것임(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출판계의 견해’, 1993. 10.14).

: 조선 93.10.14., 30면; 세계 93.10.16., 9면; 한국 93.10.20., 15면; 조선 93.10.25., 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0호(85면) · 제11호(85면) 참조

○ 증권거래법 등 개정의견

- 금융·보험회사가 타회사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경제력 집중과 관련성이 미약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출자총액한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그 대신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지주회사화를 방지하고 있으므로, 삼성생명 등이 기아자동차 주식을 취득한 것은 현행 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현재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이경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 최근 삼성생명의 기아자동차주식 대량매입과 관련하여 현재 10%(증권사는 5%)인 기관투자자의 동일종목 주식취득한도가 특히 주식분산이 잘된 우량기업에 불안감을 주고 있어 재벌계열사인 기관투자자가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넘보지 못하도록 취득한도를 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그러나 내년부터 예정되어 있는 일반투자자의 종목당 10% 투자제한의 폐지는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며, 그동안의 여러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건설한 상장기업과 부실한 비상장기업의 합병을 추진하는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기관투자자가 밖에 없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기관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제한에 관하여는 반대하는 입장임(재무부).
- 금융보험사에 대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주식의 자유로운 운용관리를 통하여 고객이 예탁한 자산수익을 최대화하라는 취지이지 고객의 자산을 이용하여 타회사의 경영권을 넘보라는 뜻은 아닌데 이번 삼성생명의 기아자동차주식 매입사건을 계기로 법체계의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향후 법령정비를 통하여 무분별한 경영권의 침해를 막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임. 또한 금융·보험회사의 주식취득 허용은 당초취지가 위탁자산의 수익성 제고에 국한된 만큼 취득비율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의 의결권을 허용하지 않아야 함(김선옥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국세기본법」은 출자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을, 「증권거래법」은 35% 이상인 기업을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허술한 규정으로 재벌이 마음

만 먹으면 계열금융사를 통하여 표적으로 삼은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여 경영권을 쉽게 장악할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를 현실에 맞게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는 대주주 1인 이외 주주의 지분을 10%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증권거래법」의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주가를 부추겨 증시기반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듯하나, 결과적으로 기업인수·합병을 촉진하여 2~3년전에 미국에서 유행하던 '기업사냥'의 바람이 불게되면 기업은 만성적인 자금난에 금융비용의 부담이 과중한 현실에서 경영권수호를 위하여 지분율을 확대하는 부담까지 안게 되어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고 경영권의 불안은 기업성장을 저해하게 될 것이므로 재고되어야 함. 이와 아울러 기관투자가인 금융사가 관례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시장개방으로 투자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므로 의결권행사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고, 금융사는 공공성이 강한 만큼 수탁자산을 운영하는 데 엄격한 제한을 가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주식분산·업종전문화 등의 취지에 맞도록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미비점을 서둘러 정비하여야 할 것임(세계일보 사설).

- 미국에서는 '80년대에는 소위 기업사냥꾼들에 의한 '적대적인 매수합병'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90년대에 들어와서는 기업상호간의 경쟁력 보완과 체질개선을 위한 '우호적 매수합병'이 자동차와 반도체업종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세계화하여 국경없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적대적 매수합병'에 대비하여 경영권 수호공방을 벌여야 할지도 모를 시대착오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하여 미국·일본·EC 등 선진국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데 기업들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하여 주식수호에 매달리게 되어 적대적 매수합병사태로 공격하는 측이나 방어하는 측이나 주식매입전을 벌이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자금의 전용과 부채의 증대를 가져와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결국에는 경영의 부실화를 가져오고 기업윤리에 따른 법과 질서의 훼손도 가공할 것이므로 정부는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적대적인 매수합병'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우호적인 매수합병'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임(이재승 한국일보 논설위원).

: 동아 93.10.19.,10면; 한국 93.10.19.,7면; 세계 93.10.19.,8면; 동아

93.10.20., 11면; 한국 93.10.20., 5면; 한겨레 93.10.20., 3·7면; 경향
93.10.20., 6면; 서울 93.10.20., 8면; 국민 93.10.20., 7면; 한겨레 93.
10.21., 7면; 서울 93.10.21., 8면; 조선 93.10.23., 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호(102~103면) · 제12호(89면) 참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개정의견

- 현재로는 세수증대 전망이 불투명하여 세율의 조정이 어려우며 토지초과이득세는 자가상승억제에 큰 효과가 있는 만큼 현제도의 유지가 바람직함(이경식 부총리겸 기획원장관).
- 실명제의 정착과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하여 탈루세금을 전제로 제정된 현행 고율의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전면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하고,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하여 노출되는 자료를 근거로 과거의 세금을 추정할 수 없도록 특례법안을 제정해야 할 것임. 또한 조세권이 과소비억제, 부동산투기대책 등 다른 정책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투기억제가 주목적인 토지초과이득세는 전면 개정되어야 함(강경식 민자당의원).
- 정부가 종교활동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의 신축증축, 교육관, 기도실, 수련원 등 실질적인 필요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교회토지를 유휴지로 판정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이에 따라 ① 교회 보유 임야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및 과세유예기간 설정, ② 종합토지세 등록세 취득세의 과세유예기간 연장 및 교회별 구분과세, ③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 및 교회 부목사·전도사의 사택취득에 대한 비과세 허용, ④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교회·지방회·노회·연회·본부에의 고유번호 부여 등 4개의 청원건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개정을 촉구하기로 함. 이와 함께 기독교 재산의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기독교재산보호관리법(가칭)」 제정안을 범교단적 합의로 마련하여 국회에 청원할 예정임(기독교계).
- 사찰의 소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및 종합토지세 면제를 불허하는 내무부와 재무부의 입장은 불교계를 무시한 처사임. 이와 관련하여 ①비과세 분야에 전통사찰의 부동산 일체를 포함하고, ②각급 공원 입장료의 30%를 공원내 사찰에 분배할 것이며, ③농지법 개정에서 사찰대표의 의견을 참조해야 할 것임(불교계).

: 경향 93.11.2.,4면; 세계 93.11.2.,5면; 국민 93.11.30.,21면; 국민 93.12.6.,2124면 국민 93.12.7.,21면; 한겨레 93.11.28.,9면; 한겨레 93.11.29.,3면; 서울 93.11.28.,9면

○ 특허법시행령 개정의견

-최근 우선심사요청이 매년 약 2배가량 증가하고 있어 심사의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해당분야 심사관에게 부담이 편중되고 있으며 더욱이 우선심사를 출원한 서류중30% 이상이 기각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허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방위산업, 공해방지관련산업, 수출촉진관련기업 등의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하도록 하는 우선심사대상출원제도를 폐지할 방침임(특허청).

: 세계 93.10.15.,9면

○ 화학무기금지협약관련 입법의견

- 화학무기의 원료로 쓰이는 독성화학물질의 생산과 수출을 규제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의 발효에 따라 화학무기금지협약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내년에 관계법령을 제정할 방침임(상공자원부).

: 서울 93.10.29.,2면

◎ 農林·水産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개정의견

- 축사·공장용지 등으로 전용된 농지를 별도의 허가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전용후 8년으로 종전보다 3~5년간 연장하고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설치하는 양축시설 및 양어장은 3천 3백㎡(1천평)까지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하고 1t 미만으로 되어 있는 현행 농지소유제한을 철폐하며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한 조합원에 한하여 가능한 현금출자도 농지를 출자하지 않은 조합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함. 이와는 별도로 영농후계자들은 영농조합원의 자격기준인 '1가구 1인'원칙에 상관없이 영농조합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하고, 내년부터 농업사·임업사·어업사 등의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1천명 내외의 우수농어민들에게 자격을 부여하기로 함(농림수산부).

- ①위탁영농회사설립자 자격제한을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로 하던 자격제한을 해제하고, ②1천평 이하로 묶여 있는 위탁영농규모상한선을 폐지하고, ③4백 50평 미만으로 되어 있는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허가면적을 공장설립의 경우 3천평까지로 확대하고, ④농지의 일시전용허가권을 확대하여 읍·면장에 위임하고 농한기로 되어 있는 허가식제한을 폐지하고, ⑤'96년부터 가축시장 의무거래제도를 폐지하여 소의 거래제도를 자율화 하며, ⑥양곡소매상의 정부미 상시보유량제도를 '94년부터 폐지함. 또한 ⑦농정관련 민원처리기간을 '94년부터 단축하여 미강착유시설의 양도·임대신고와 미강착유업자 지정신고는 10일에서 7일로, 농약영업변경신고는 7일에서 3일로, 농약판매업의 등록은 7일에서 5일로, 축산물작업장설치허가증의 신청·동물용의약품판매업 등록사항변경신청·동물용의약품판매업등록증의 재교부 등은 2일에서 즉시발급으로 단축함. 이와 함께 ⑧농어민 후계자 관리를 개선하여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된 후 3년이 지난 우수후계자에 대하여 5천만원을 융자하고 「병역특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어민후계자를 병역특례자로 인정하며, ⑨'94년부터 농지전매제한규정을 개선하여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농지를 매입한 자와 자금지원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농어촌진흥공사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전매할 수 없는 농지임을 명시하도록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개정하고, ⑩수입농산물의 포장단위를 품목별로 10kg, 1kg, 5백g 단위로 소포장화하여 악덕소매상들이 포장을 풀어 국산농산물로 속여파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함(행정쇄신위원회).

: 세계 93.10.14., 7면; 서울 93.10.22., 1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2호(92~93면) 참조

○ 농어촌정비법(가칭) 제정안

-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내년부터 전국 1백 36개 시·군에 '21세기 시범농어촌마을'을 건설한 뒤 오는 2010년까지 전국에 걸쳐 모두 2천개의

전원형 현대식 집단마을을 조성하여 나기기로 하고 한계농지, 그 주변산지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이용하기 위하여 원예단지·주말농장·농어촌주택·실버타운 등 유형별로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비영리목적으로 개발된 2백평 미만의 주말농장에 대하여는 비농민 소유도 가능하도록 하고, 농지외의 농업경영합리화시설 및 농업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의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창설환지제도'를 도입하며, '어장교환제도'를 신설하여 강화·서산·고창·신안 등 전국 51개 임해군에 대하여 수산업생산기반정비와 어촌정비를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여 「농어촌정비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함. 이와 함께 농어촌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건축절차 등 20여개의 관련법 규상의 허가·승인·동의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함(정부·민자당 농수산당정회의, 1993.10.15).

: 조선 93.10.16., 2면; 경향 93.10.16., 2면; 국민 93.10.16., 1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1호(90면~91면) 참조

○ 농업재해특별보상법(가칭) 제정의견

- 올해의 냉해피해는 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국적으로 냉해를 입지 않은 농가가 전무하다시피 하므로 수매값은 단보당 생산량이 줄어들어 따라 늘어난 생산비를 반영하여야 함. 아울러 정부가 냉해보상을 수매값과 분리하여 별도의 보상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농민들이 불신하는 것은 지원대상을 경작면적 1ha 미만에 피해를 50% 이상으로 한정되는데, 이러한 규정으로는 올해처럼 심각한 상황을 수습할 수 없으므로 「농업재해보상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심한 냉해를 입은 올해에 한해서라도 충분한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임(김동열 한국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장).

: 한겨레 93.11.2., 13면

◎ 建 設

○ 건설관리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건설부조리를 근절하고 정부사업의 무계획적인 추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

필요한 규제의 완화 등 건설관련제도를 시급히 개편하여야 함. 불필요한 정부규제, 건설관련제도의 불투명성, 기존업자 과보호정책 등이 건설부조리의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①설계와 시공의 연계강화, ②건전한 하도급관행 정착, ③책임시공체제 확립 및 감리기능의 강화, ④건설인의 의식개혁 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업계획단계에서 예산 확보, 설계, 시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정부건설사업의 기본절차를 규정한 「건설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한편 입찰담합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리감독원을 신설하며, 기술개발을 위하여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지 않고서는 건축설계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 「건축사법」을 보완하고 선 기술평가 후가격협상 형식의 2단계 종합낙찰제를 채택함과 아울러 정부건설공사 단가를 현실화하여야 함(부정방지대책위원회).

: 조선 93.11.2.,2면; 세계 93.11.2.,21면; 서울 93.11.2.,3면

○ 건축법시행령 개정의견

- 지금까지 도시구역에서 공장을 신축할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관할 행정관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2층 이하 5백㎡까지의 공장은 신고만으로 신축할 수 있게 하고, 바닥면적이 3백 30㎡(수도권은 2백㎡) 이상인 모든 건축물은 지하에 대피시설을 갖추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장이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규모에 관계 없이 지하층을 건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현행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차고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 각종 차량들의 주차난을 덜기 위하여 이곳에도 주차장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하고 지금까지 주거시설에 건립된 수퍼마켓은 연건평이 5백㎡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그 이상을 판매시설로 분류하였으나 수퍼마켓의 연건평이 1천㎡까지는 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 또한 준공검사가 불필요한 행정절차인데다 건축공정을 장기화시키고 관련공무원의 부조리가 빚어지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대신 건축사를 비롯한 민간감리자에게 일임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일정공기에 이르면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중간검사제도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임(건설부).

: 세계 93.11.19.,7면; 세계 93.11.25.,7면; 서울 93.11.25.,22면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정안

- 고속도로·철도변 등 소유권 주변 주택의 경우 구역내 다른 곳으로 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설운동장이나 사격장의 설치, 기존 경마장시설의 증축, 소규모 종교시설의 증축도 허용하며, 유기농업을 위한 퇴비장의 설치와 기존 공장내 생산품 야적용 가설천막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원주민 기준을 당초보다 완화하여 구역지정 당시 거주하다가 일시적으로 구역밖으로 주거지를 옮겼더라도 구역내 집을 계속 소유했고 전출사유가 취업이나 취학·질병·요양·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고 전출기간이 최장 3년 이내인 경우 원주민으로 포함하여 주택의 증·개축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 이 밖에 민간시행공사의 임시가설 건축물이나 위탁영농회사의 농기계보관창고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노유자 복지시설'의 범위도 구역내 주민을 위한 유치원·유아원·탁아시설·노인복지회관 등으로 구체화 하며, 종래 그린벨트내에는 농·수·축협사무실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임업협동조합사무실도 건축할 수 있게 하고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이 건축공사를 등을 할 때에도 가설건축물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함(건설부).

: 조선 93.11.18.,10면; 한국 93.11.18.,6면; 동아 93.11.18.,2면; 한겨레 93.11. 18.,7면; 서울 93.11.18.,9면; 국민 93.11.18.,6면; 경향 93.11.27.,9면

○ 도시공원법시행령 개정의견

- 그동안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 관련규정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따를 뿐 아니라 시설물의 관리·유치도 어려웠으므로, 도시공원내에서 농·임·어업 등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활동을 위하여 자기 소유토지에 연면적 20평 이내의 관리용 가설건축물을 지을 경우 이를 허용하고 시설녹지안에서의 허용행위를 대폭 확대하여 녹지조성 이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농·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나무채벌 및 식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개축 및 재건축, 수선은 물론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 가설 수용시설의 신축도 허용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공원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함(건설부).

: 국민 93.12.9.,6면; 조선 93.12.10.,11면; 한국 93.12.10.,8면; 한겨레 93.12.10., 7면; 서울 93.12.10.,8면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의견

- 서울시의 반대로 입법이 연기되었던 수도권과밀부담금제도를 확정하여 부담금 산정기준을 땅값과 건축비의 10%로 한다는 당초 방침을 건축비의 10%로 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서울시와 지방발전기금에 50%씩 배당하며, 징수권자도 건설부장관이 아닌 서울시장으로 하는 등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기로 함(건설부).
- 그동안 건설부와 서울시간에 이견을 보여온 수도권 과밀부담금제도 도입문제와 관련하여 ①과밀부담금 산정기준을 순수 건축비의 10%로 완화하고, ②과밀부담금의 징수권자를 건설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바꾸되 부담금은 국고와 지자체에 50%씩 배분하며, ③부과대상지역 및 대상규모 등은 앞으로 시행령 개정때 결정하기로 하고, ④국고로 들어가는 부담금 50%를 재원으로 지역균형개발기금을 신설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 등의 지원에 사용하도록 함. 또한 ⑤개별적으로 규제해온 공장·대학 등의 규제도 앞으로는 수도권의 연간 총허용량을 설정하여 권역별로 배분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허가하도록 하고, ⑥수도권내 1백만 m^2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미리 인구·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기로 하며, ⑦수도권의 권역을 현행 5개권역에서 자연보전권역은 현행대로 존치시키되 이전촉진과 제한정비권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개발유도와 개발유보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각각 묶어 3개 권역으로 단순화 함(정부·민자당 당정회의, 1993.10.28).

: 조선 93.10.23.,11면; 동아 93.10.29.,2면; 경향 93.10.29.,6면; 세계 93.10.29.,2면; 서울 93.10.29.,2면; 경향 93.11.3.,4면; 세계 93.11.5.,7면; 서울 93.11.5.,2면; 국민 93.11.5.,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94~96면)·제10호(96면)·제11호(93~94면)·제12호(99면) 참조

○ 전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 소규모수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모든 소수력발전소를 설치할

때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3천KW 이하의 소수력은 설치 허가 없이 지을 수 있도록 하고, 2천KW 미만의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 설비 소유자가 채용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중 현재 3년 이상인 전기기사 1급자격소지자의 해당분야실무경력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며,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대행시킬 수 있는 자가용발전설비용량의 범위를 현재의 1백KW 미만에서 5백KW 미만으로 확대하고 전력수요예측을 위하여 한전에 1년전에 전기사용계획을 통보해야 하는 시설(5천KW) 중 오피스텔 등 일반업무시설의 경우 2천 KW 이상이면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전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함(상공자원부).

: 조선 93.11.17., 11면; 동아 93.11.17., 11면; 한국 93.11.17., 7면; 서울 93.11.17., 9면; 경향 93.11.17., 7면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낙후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민간개발자를 통하여 각종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대도시와 공단을 중심으로 한 광역개발사업과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공동으로 '지역개발법인'을 설립하거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며 민자유치를 위한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로 함. 또한 민간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대학·주택단지·상업시설 등을 함께 개발하는 소위 '대학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공업·연구·문화·유통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복합단지'를 개발하기로 함. 아울러 지방점거권 육성을 위한 광역개발제도의 도입,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촉진지구 지정, 민간에 의한 지역개발촉진 등을 지역균형개발의 기본방향으로 잡고, 광역개발의 경우 지방대도시와 그 주변지역, 공업단지과 그 배후지역, 그리고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생활권을 이루는 지역을 광역권으로 지정하여 개발하기로 하며, 개발촉진지구는 기존의 특정지역지정제도를 발전적으로 흡수하여 지정하고 이 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의 수용 및 사용권을 부여하며 개발촉진지구에 대하여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한편,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가 도로·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등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하여 주기로 함(건설부·민자당).

: 세계 93.11.5.,7면

○ 해안역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간척·매립 등 해안역의 기초개발부터 임해공단 조성·해양관광단지 개발 등 구체적인 이용과 연안환경보전에 이르기까지 해안과 인근해양에 대한 보전 및 관리·개발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개발하기 위하여 「해안역관리법(가칭)」을 제정하고 해안용도지역제를 도입하기로 함(건설부).

: 동아 93.11.26.,11면

○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개정안

- 해외건설 진출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해외건설업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의장·토목·미장·창호·콘크리트·철물 등 19종의 전문공사면허를 가진 전문건설업체를 새로 해외건설업종에 추가하고 그동안 해외진출이 허용된 일반건설업종 범위를 넓혀 토목·건축 등 단일 허가업체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보호관련 해외공사 발주가 늘어나는 데 맞추어 대기오염·수질오염·소음진동 방지시설 등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업도 해외건설업체에 포함시키는 등 해외건설 진출대상 업종을 대폭 완화하기로 함. 또한 해외건설 면허제가 등록제로 바뀔에 따라 해외건설업의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특수공사는 자본금을 현행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전기 및 통신공사는 보유기술자수를 10인에서 5인으로 각각 줄이고, 건설엔지니어링업자가 해외건설공사를 일괄수주하는 경우 시공부문하도급업자는 반드시 국내업자로 선정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여 시공부문은 해외건설업자가 맡을 수 있게 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엔지니어링의 일괄수주가 확대되도록 하며, 이밖에 건설부에 면허등록 없이 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는 기관에 토지개발공사·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가스공사 등 3개 국영기업과 서울지하철공사·부산시도시개발공사 등 2개 지방공기업을 추가시키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함(건설부).

: 조선 93.11.16.,10면; 동아 93.11.16.,10면; 한국 93.11.16.,9면; 한겨레 93.11.16.,6면; 경향 93.11.16.,6면; 세계 93.11.16.,7면; 국민 93.11.16.,7면

◎ 科學技術 · 交通 · 通信

○ 교통계획및조정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교통부문의 투자와 시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됨에 따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등이 어려워 투자에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교통 부문 투자와 기존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10년 단위의 장기비전 등을 골자로 하는 「교통계획및조정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하기로 함(교통부).

: 한겨레 93.10.26.,2면

○ 도로교통법 개정의견

- 급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국민학교 주변에 어린이교통안전구역을 설정하여 구역내에서의 차량속도를 제한하고 교통시설 및 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하도록 함. 어린이교통안전구역은 국민학교주변 반경 5백m 안에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설정되며 구역내에서는 차량속도를 20~30km로 제한하고, 어린이교통안전구역내에서는 횡단 보도 보행자신호주기를 어린이 보폭에 맞춰 길게 조정하고 무단횡단방지를 위한 가드레일과 차량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여야 함(행정쇄신위원회).

: 국민 93.10.22.,19면

○ 도로교통촉진법 개정의견

- 현재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물등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m²당 350원씩 부과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년부터는 지역과 대상에 따라 최고 50%까지 인상 또는 인하하여 차등부과하고,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업체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추가로 부담케 하는 한편 통근버스 운용등을 통하여 교통난 완화에 기여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인하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로교통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교통부)

: 서울 93.11.19.,23면

○ 발명진흥법(가칭) 제정의견

- 국민들의 발명의욕을 높이고 연구결과를 조속히 특허로 연결하여 실용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이나 연구소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특허를 얻을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직무발명보상제'를 각 기업의 내규로 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발명종업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보상금과 특허양여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해주며, 기업들도 특허의 상품화에 힘쓰도록 하여 특허를 제품화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소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기업간 특허공유 (크로스라이센스)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발명진흥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하여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또한 개인발명가들의 발명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출원인이 원할 경우 특허청은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관련연구소등에 의뢰하여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특허보유자 및 발명인과 사업자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특허실용화 알선센터'를 운영기로 함. 이밖에도 점차 늘어나는 기업간의 산업재산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특허청에 설치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지적재산권연구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며, 각종 발명단체를 묶어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기로 함 (특허청)

: 조선 93.12.10.,23면; 세계 93.12.10.,9면

○ 사회간접자본확충을위한민자유치촉진특별조치법(가칭) 제정의견

- 민간기업들에 사철을 허용하고 도로·항만·공항발전설비, 쓰레기·폐기물처리장, 댐건설에 민간투자를 유치하며 사회간접자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금융세제상의 각종 혜택과 함께 30~50년간 토지 및 시설사용권을 부여하여 사실상의 소유를 인정하는 한편, 시설주변의 유통·위락단지 등에 대한 우선 개발권을 허용하고 개발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일괄처리해주는 등 민간기업의 사회간접자본(SOC) 참여방안을 모색중인데, 투자방식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별도법인 형태로 공동투자하고 여기에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

계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연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임(경제기획원).

- 한계상태인 도로·항만·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감면하고 해당시설에 대한 투자를 여신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주며 국공유지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등 파격적인 유인책이 필요함. 민자유치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민자유치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민간투자자의 선정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김종기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 조선 93.11.3.,1면; 한겨레 93.11.10.,2면; 세계 93.11.10.,6면; 서울 93.11.10.,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2호(101면) 참조

○ 유선및도선업법 개정의견

- 현재 모든 유·도선을 시장 및 군수가 관리함으로써 안전운항에 취약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해상운항 유·도선은 해양경찰청장이, 내수면운항 유·도선은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관리체계를 이원화하고 인명구조장비나 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영업시간을 일출때부터 일몰때까지 제한함. 이와 함께 영업구역도 선박의 톤수 및 성능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유·도선의 출입항 보고와 유·도선에 대한 공무원의 검사·안전점검을 제도화하고, 승객 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가입과 운항약관의 제정을 의무화하고, 유도선의 승선정원과 유·도선사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기준을 내무부령으로 정하며, 관광유람선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도선에 대하여 선박내 주류반입 및 판매를 허용하기로 함(정부).

: 한국 93.10.14.,23면

○ 임시우편단속법 폐지의견

- 우편검열을 맡고 있는 우정연구소는 ‘모든 국민의 통신의 비밀은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8조를 위반한 위반기구이므로 우정연구소의 존립근거인 「임시우편단속법」을 폐지하여야 할 것임(정상용·이윤수 민주당의원).

- 우정연구소의 우편검열은 분단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것이며 여야합의로 「통신비밀보호법(가칭)」을 제정하면 그에 따라 조직을 개편할 방침임(운동운 체신부장관).

: 한겨레 93.10.24.,1면

○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 사납금제도를 둘러싼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운수종사자는 그가 맡은 운임과 요금의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이를 수령하도록 의무화하고, 버스나 택시등이 승차거부 또는 부당요금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만 처벌하던 것을 운전기사까지 처벌토록 하며, 또 자동차운수사업등록을 받은 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함으로써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함 (국무회의)

: 동아 93.12.3.,29면; 세계 93.12.3.,22면; 경향 : 93.12.3.,22면

○ 차고지확보등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대도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차고지 증명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오는 '95년부터 비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행하는 차고지확보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규등록 또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러나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국민의 경제적 부담, 자동차 공업발전의 영향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과 자동차의 적용범위 등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정부·민자당 교통관련 당정회의, 1993. 11.3).

: 서울 93.11.4.,3면

○ 항공법 개정안

- 소음피해지역내의 상주인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제한규정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항공기소음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 이미 시가지로 지정된 지역은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

로 주택의 신축 및 증·개축을 허용하는 등 건축제한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함(교통부).

: 한국 93.12.8.,29면; 세계 93.12.8.,22면

◎ 環境・保健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200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대기를 크게 오염시키는 3t 이상의 대형경유자동차에 대한 연차별 대기오염허용치 강화기준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하고, 질소산화물의 경우 11.0g/kWh(1시간 동안 전기 1kW가 발생하는 힘이 작동하는 동안 배출되는 질소화합물의 양)에서 6.0g/kWh로, 입자상 물질(먼지)은 kWh당 0.9g에서 0.25g으로, 매연은 35% 이하에서 25% 이하로 조정하여 오는 '98년부터 적용할 방침임(환경처).

: 한겨레 93.11.4.,18면

○ 배아보호법(가칭) 제정의견

- 인간을 대상으로 유전공학적 실험을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법제화할 경우 자칫 과학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은 관련 학자들이나 단체 등이 자율규제방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조병룡 보사부 의정국장).
- 인간의 복제실험은 불치의 유전자질환을 치료하거나 장기이식의 공급원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이 실험을 무제한으로 인정할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무서운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는데, 수정란을 유전자 조작 등의 연구대상으로 삼거나 폐기하는 행위 등을 현행 형법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함. 현행 형법상 상해죄는 형법이 사람으로서 보호하는 시점 이후(분만개시 이후)로 제한되어 있고, 낙태죄의 객체도 착상 전의 배아가 아니라 '살아있는 태아'에 국한되며 사체와 마찬가지로 재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낙태죄나 상해죄 또는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음. 따라서 착상전 배아도 '태아'와는 별개로 인간이라는 생명체로 탄생할 잠재력을 가진 존재인 만큼 '잠재적 인격주체성'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법률로써 규제하여야 할

것임. 즉, 착상전 배아에게 생물학적 지위 이상의 높은 가치를 부여하여 '복제인간', '잡종인간' 등에 대한 법적 처리문제에 봉착하기 전에 입법을 서둘러야 이러한 입법자체가 응용과학분야에서 발견될 수 있는 '윤리불감증'을 환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장영민 인하대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최 학술세미나 『의료와 형법』 주제발표, '생명공학의 형법적 한계', 1993.10.29).

: 조선 93.10.29.,30면; 동아 93.10.29.,30면; 국민 93.10.29.,18면; 서울 93.11. 10.,23면

○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개정의견

- 건강식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와 폭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보조식품의 방문판매를 금지하고 판매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만 건강식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함(보사부).
-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통기간 표시만으로는 소비자가 신선한 제품을 구입하거나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므로 식품의 신선도가 중요한 냉장·냉동식품과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개월 미만으로 부패하거나 변질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는 제조일자도 함께 표시하여야 할 것임(한국소비자보호원).

: 조선 93.10.19.,30면; 국민 93.11.20.,11면

○ 약사법 개정의견

- 최근 행정부의 수반이 약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으로 언급하여 입법부의 법안심의과정이 한낱 형식적 절차임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는 의회민주주의 본령에 어긋나는 것으로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대한약사회).

: 동아 93.11.19.,29면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의견

- 부탄가스가 아무 규제없이 판매되는데다 휴대하기 쉽고 환각효과가 있어 흡입청소년들과 환각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부탄가스의 유통을 규제할 수

있는 범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부탄가스의 독성이 기준에 미치지 않아 유독물질로 분류하는 것이 어렵다면 예외조항을 만들거나 독성기준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규제입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대검찰성).

: 한국 93.11.22.,31면

○ 의료법 개정의견

- 의료기관의 종류에 '요양병원'을 신설하여 장기요양환자들이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합병원은 20병상 이상에서 30병상 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며, 환자가 검사기록이나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을 요구할 경우 의료인이 이에 응하도록 하고 진료기록의 열람을 요구할 때에도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 지장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함(보사부).

: 서울 93.10.15.,2면

○ 의료분쟁조정법(가칭) 제정의견

- 의료사고분쟁이 늘어나 분쟁조정을 위한 특례법의 제정 필요성이 각계에서 일고 있으며 보사부도 5차례에 걸쳐 법안을 공포하였으나 이해당사자의 첨예한 이해대립과 당국의 일관성 없는 자세로 아직까지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음.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피해배상소송 또한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어 피해자가 승소하는 예가 거의 없는데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반성에서 특례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므로 법제정의 주안점이 철저히 '국민편익'에 두어져야 할 것임.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 분쟁조정기구를 강력한 권한을 가진 준사법적 기구로 만들어서 의료과오의 유무가 명백한 경우 당사자들이 중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제중재권 또는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재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보사부안처럼 시·도의 부시장이나 부지사가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기구로는 중재위원회의 중립적 운영이 어려우므로 중재위원을 국회·사법부·행정부가 균등하게 추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통하여 정부로부터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쟁조정의 핵심인 의료과오 유무판정을 전문가인 의료인이 맡을 수 밖에 없으므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판정관을 상설화하여 장기적인 양질의 자원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한기찬변호사,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주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추구를 위한 시민토론회', 1993. 10.26).

-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이익이 매우 컸기 때문에 신속한 보상을 원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특별법의 효용성을 높이고 의료사고 판정의 졸속을 피하기 위하여는 3개월 1심제로 규정한 현행 보사부안의 조정절차를 6개월 2심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의료사고와 같은 생명관련 사항은 조정이나 타협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과실책임을 명백하게 심판하는 것이 인도적이므로 피해구제기구는 조정이나 중재보다는 명확한 판정권능을 부여할 수 있는 '심판위원회'로 대체하여야 할 것임(문옥륜 서울대학교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주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추구를 위한 시민토론회', 1993.10.26).
- 단순 분쟁조정기구가 아닌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사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중재위원회가 필요하며, 전문조사인의 사실조사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명백히 밝혀지면 의료인이 불복하더라도 중재위의 중재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 판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김성숙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처장,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주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추구를 위한 시민토론회', 1993.10.26).
- 「의료분쟁조정법(가칭)」 제정에 앞서 의료제도 개선을 통한 의료과오의 제도적 예방에 힘써야 하고 「의료분쟁조정법(가칭)」의 취지에 비추어 의료보험자도 각출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피해자 가족은 물론 제3자가 난동행위 등을 통하여 의료인의 굴복을 강요하는 불법사태가 관행화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피해자 가족의 난동규제와 제3자 개입금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한동관 영동세브란스병원장,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주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추구를 위한 시민토론회', 1993.10.26).
- 분쟁조정위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삼권분립이 명확하게 지켜지는 현행 법체계에서 행정기구에 사법권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기구를 만들기는 어려우며, 의료인의 과실이나 피해가족의 난동에 대한 형사벌 규정은 경각심을 불러넣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이기하 보사부 재활과장,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주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추구를 위한 시민토론회', 1993.10.26).

: 동아 93.10.27..30면; 한겨레 93.10.27..16면

○ 응급의료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응급진료기관체계를 종합병원·응급의료기관·당직의료기관 및 대부분의 일반 병·의원의 3단계로 구분하여 현재 무분별한 응급실표시를 종합의원 및 응급의료 지정기관으로 제한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거부와 관련하여 해당의료인은 물론 병원장, 관련법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과 동시에 고의·특별한 과실이 없는 진료자의 불가피한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는 면책하도록 하며, 현재 전국 12개시에서 운영중인 응급환자정보센터가 각 의료기관과 응급의료통신망을 관리하여 구급차의 출동 등의 조치를 의료기관·구급차운영업체 등에 강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함(민자당).

: 조선 93.11.23..31면

○ 정신보건법(가칭) 제정의견

- 그동안 정신질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들에 대하여 치료보다는 단순격리 및 수용에 급급해 왔는데 정신요양시설을 본격적인 사회복지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도 법제정이 시급함(보사부).
- 현재 정부의 정신과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지원금이 연간 수백원씩 적체되어 전국정신병원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보사부의 「정신보건법(가칭)」 제정안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비현실적임(정신병원협회).
- 지난해 초 보사부가 전격적으로 「정신보건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수차례 논의가 있었고 국회에 상정한지 1년이 지나도록 국회가 법안심의소위조차 구성하지 않아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가 어려운데, 보사부는 제정의 필요성과 각종 장치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소지를 완전히 불식시켰다고 누누이 강조하여왔고 이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데 대하여는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으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심의조차 않고 있고 또 공감하는 대다수가 법안에 회의적인 이유는 법안의 불완

전성 때문임. 단적인 예로 법안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보다는 격리수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정신요양시설을 모두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의료기관과 요양원, 사회복지시설로 구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법안대로라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원이나 복지원이라는 이름의 수용시설에 환자를 '감금'하는 정도밖에 안되는 것임. 이와 함께 법안이 입원요건의 세분화, 자동회원제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소지를 불식시켰다고 하지만, 환자·의사의 합의와 중립적 입원소청기관의 선정, 부당요구에 대한 의사의 거부권까지 둔 세계정신의학회의 '하와이선언'에는 크게 못미쳐 부당한 인신구속을 막기는 역부족일 것임(국민일보 칼럼).

: 국민 93.11.20.,17면; 동아 93.11.20.,30면

○ 지하수법(가칭) 제정의견

- 정부는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과 함께 그 오염방지와 보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지하수법(가칭)」 제정안을 최근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데, 이 법안은 지하수의 오염이나 고갈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지하수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환경처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대하여 지하수수질조사를 의무화하고 일부 오염시설에 대한 규제의 근거를 명문화하고 있음. 그러나 양산공단 북정공업지구의 예에서 보듯 환경당국과 일선 행정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도행정의지가 미흡한 가운데 기업의 의식도 아직 낮은 이러한 정도의 입법만으로는 지하수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임(이주명 한겨레신문 기자).

: 한겨레 93.10.13.,8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2호(105면) 참조

○ 폐기물처리시설정비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96년부터 제지·제철·고무·섬유 등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산업체와 공단 등에 일정폐기물량을 할당하여 이를 초과배출할 수 없도록 하는 '산업별 폐기물발생 종량규제제도'를 도입하고 폐기물 매립지현황지도를 작성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정비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기로 함(환경보전실무대책회의).

: 한국 93.11.19., 30면

○ 환경개선특별회계법(가칭) 제정안

- 환경개선특별회계의 기본재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천 5백억원을 조성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오염배출부담금, 폐기물관리예치금 등 각종 환경관련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함. 그러나 그동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신설을 둘러싸고 액화천연가스(LNG)에 환경세를 신설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의 환경처 시안에 대하여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어왔는 바, 환경세는 신설하지 않기로 함(정부·민자당).

: 조선 93.10.11., 2면

◎ 法院・法務

○ 가정폭력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결혼후 남편에게 맞은 경험이 있는 여성이 전체의 절반이 훨씬 넘는데도 이에 대한 규제책이 없는데 아내구타는 개인적인 가정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이자 인권침해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므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보완책으로서는 보호명령과 일시보호명령조치를 담은 「가정폭력특별법(가칭)」을 제정하고 별거권을 인정하며 이웃의 신고제도입 등이 필요하며 특별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현행 「사회보호법」 안에 관련조항을 삽입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인 여성과 어린이가 경제적 약자인 점에 비추어 생계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마련 및 응급보호체계 강화와 의료보험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
- 현재 경찰·법원·병원 등에서 가정폭력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가정폭력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야 하며 의료보험체계를 개선하여 가해자 치료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여야 할 것임(신혜수 한국여성의 전화 부소장).

: 한겨레 93.11.28., 8면

○ 경찰관집무집행법 개정의견

- 현행 피의자보호실이 법적 근거없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데다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계에 설치되어 있는 철창형 보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서 형사계 안에 1.3m의 나무칸막이를 설치하여 그 안에 피의자를 유치하도록 하며, 특히 징역 3년 이하의 경미한 사안의 피의자는 형사계 사무실에 직원들과 함께 머물게 하고 서내에서의 자유로운 행동도 허용하는 규정을 「경찰관집무집행법」에 추가로 신설하기로 함(경찰청).

: 경향 93.11.7.,18면

○ 국가배상법시행령 개정의견

-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경우 장래 취업가능기간을 56세까지에서 60세까지로 연장하여 평균임금을 배상하도록 하고 위자료도 현행 최고 2백만원에서 최고 1천 2백만원으로 올림. 또한 피해자가 신체의 장애로 타인의 보호를 필요로 할 때 드는 비용인 간호비를 현행 '여자일용직 노동임금 5년분'에서 평균수명에 이를 때까지로 늘려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장례비 및 요양비 배상액수도 실제경비에 가깝도록 현실화하며 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피해자특이 지급을 요구할 경우 간단한 심의를 거쳐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가상승과 경제발전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국가배상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법무부).

: 세계 93.11.19.,23면

○ 국적법 개정의견

- 중국여자교포와 우리 농촌총각과 결혼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이러한 위장결혼을 막기 위하여 최소한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여자에 한하여 국적 취득을 허가하도록 「국적법」을 개정할 방침임(법무부).

: 국민 93.12.7.,18면

○ 기술판사제 도입관련 입법의견

-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률전문인 일반판사들로 구성된 고등법원에

서 전문기술분야을 다루는 특허항고사건을 적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독일 등 유럽에서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술판사제도를 도입하고 고등법원급의 특허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특허제도 본래의 목적을 살리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일 것임(대한변리사회).

- 특허항고심판이 고등법원으로 이관되어 만일 판사가 기술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법률적용을 할 경우 특허권을 상실하는 일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업은 수년간의 투자가 필요한 기본기술이 아니면 특허출원을 기피할 것이며 발명의욕은 크게 위축될 것임. 또한 전문기술지식을 갖춘 변리사 뿐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이므로 결국 기업체나 개인발명가는 이중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임(김경철 대우전자 특허부장).
- 특허심판제도의 개선문제는 법리적 측면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과학기술자와 기업체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므로 특허법원의 설치와 기술판사제의 도입은 필수불가결한 것임(김유환 한남대학교수).
- 특허를 둘러싼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문제를 심리·판단할 능력이 있는 기술전문가인 기술판사가 법률판사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여 특허관련소송을 전담하도록 하고 특허법원을 설치하여야 함. 또한 일반법관을 보좌하는 기술조사관을 두자는 법조계의 견해가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과는 달리 기술분야에 충분한 전문지식을 가진 법률가를 판사로 임용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조사관제도가 성공하기 힘들 것임(박재용 한국과학기술청년회 회장).

: 세계 93.11.19., 9면; 한겨레 93.11.20., 8면

○ 뇌사 및 장기이식관련 입법의견

- 안락사는 생명의 종기에 대한 결정과 환자의 자결권범위와 한계, 의사의 생명유지권, 안락사의 개념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을 가지며 생명권의 본질적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인의 승락이나 촉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생명의 훼손행위는 살인행위이지 결코 법이 허용할 수 있는 안락사로 사칭될 수 없음. 회복의 가망이

없는 불치의 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환자에 대하여 그 의사를 따르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 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인 존엄사는 불치의 질병이나 빈사 상태에 빠져 있고 임종에 직면해 있는 환자라 할지라도 요청이나 승락에 기초를 두고 그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서 살인임. 불치의 병에 걸린 환자가 직접적으로 임종의 위험에 접어들어 의사의 치료를 거절하고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할 때 의사가 생명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아 죽게 하는 것은 환자의 자결권이 유효하게 행사된 것으로 간주되어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만, 극심한 고통으로 신음하는 환자의 요청이 있어도 의사가 의도적으로 생명을 단축한다면 이는 안락사를 빙자한 살인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높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임.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자가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생명유지조치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표시하면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음(허일태 동아대학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최 세미나 『의료와 형법』, ‘안락사에 대한 연구’, 1993.10.29).

- 현대의학으로는 뇌사의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고 뇌사에 의한 죽음판단의 경우는 전체 죽음판단의 사례중에서 1%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맥박종지 설은 여전히 죽음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유효한 것이므로 뇌사자의 장기적출은 형법이론상 문제가 없지 않으나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는 위법성이 저각된다고 보아야 함. 뇌사자의 장기적출은 본인이나 유족의 동의가 있더라도 일단은 승락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되지만 의사의 장기적출행위는 생명연장을 위하여 의료행위상 필요한 조치이므로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임. 뇌사자의 사망시간은 심장정지 또는 심장적출시가 되어야 하고 장기매매의 금지, 장기적출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장기적출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오영근 한양대학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최 세미나 『의료와 형법』, ‘뇌사자의 장기이식의 형법적 문제’, 1993.10.29).

- 뇌사자의 장기이식은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것이므로 우리도 뇌사를 인정해야 하며 뇌사자가 장기를 기꺼이 제공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법적으로도 이를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함(김수태 서울의대학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최 세미나 『의료와 형법』.

1993.10.29).

: 세계 93.11.1..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 참조

○ 법의관제 도입관련 입법의견

- 의문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고 범죄수사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검사가 전문인력 부족으로 형식에만 그치고 있으며, 현재 검사가 검사를 지휘하면 경찰관이 이를 집행하고 부검은 의사가 맡도록 되어 있는 다원화된 검시체제로 검시처리기간이 지연되거나 처리내용이 충분하지 못하고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등 현행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시전문인력을 대폭 늘리고 처리기준이나 처리내용에 관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여야 함. 또한 지방공의와 경찰공무원·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시교육을 강화하고 현재 서울대와 고려대·경북대의대에만 설치되어 있는 법의학교실도 다른 의과대학으로 확충하여 전문검시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이같은 단기적 처방외에도 확고한 검시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검시전담기관 및 법의관과 같은 전담 검시관제를 서둘러 도입하여야 할 것임(백형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

: 세계 93.11.20..17면

○ 사법제도개선관련 입법의견

-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직접참여를 철저히 거부하는 세계에서 거의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비민주적인 법제도이므로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배심제, 등 민중의 재판참여가 보장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임. 이와 함께 문서조서주의에서 구두주의로 사법과정을 전환하여야 하고 소송비용을 줄이고 재판기간을 단축해야 할 것이며, 법관의 공선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임(박홍규 영남대교수, 학술단체협의회 제6회 연합심포지움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적 과제·제도, 개혁 및 사회운동』 1993.10.16).
- 정치의 민주화를 위한 개혁방향으로는 상호경쟁할 수 있는 정당체계의 확립,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갖가지 장벽의 철폐, 표현의 자유 신장, 행정부의 독주방지 등을 이루어야 함. 이를 위한 제도개혁의 내용으로 ①유권자의 각 정당 전국구후보 직접선택, ②선거공영제의 과감한 확대실시, ③직

업공무원제의 확립과 통·반장제의 폐지, ④정당설립요건의 완화와 정당가입제한조항의 원칙적 폐지, ⑤정치자금의 전면공개 등임(이남영 숙명여대교수, 학술단체협의회 제6회 연합심포지엄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적 과제·제도, 개혁 및 사회운동』 1993.10.16).

- 범국민적 사법제도 개혁기구 구성원의 구체적 인선기준을 마련한 뒤 사회적 신망이 있는 인사중 사법제도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높은 법조계·정계·언론계·학계·정사협 등 사회단체에서 각 2~3인씩으로 구성된 25~35인 정도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사법제도 개혁기구를 사법시험개선위원회, 사법연수제도개선위원회, 법관인사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①법관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근무평점제도 도입, ②서울 민·형사지법의 통합, ③대법원의 법률심기능 강화를 위한 심급제도의 개선, ④법관회의의 상설화, ⑤법관임용제도의 개선, ⑥법관직급제도의 개선, ⑦법원모욕죄의 신설 등을 각 해당분과위원회별 안건으로 상정하여 검토 및 개선안 마련작업을 추진하도록 할 방침임(대법원).
- ‘사법제도발전위원회’ 발족 등 사법부의 제도개혁작업에 발맞추어 구속영장 청구요건을 강화하는 등 검찰의 기존제도 및 관행을 개폭 개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법무부차관 등 사법위 위원으로 위촉되는 검찰인사들을 법원과의 대화창구로 활용하여 사법위에서 검찰과 관련된 개혁방안을 적극 반영할 방침임. ①구속영장실질심사제, ②상고제도의 개선, ③양형기준제의 도입, ④법원모욕죄의 신설, ⑤대법원의 법률안제출권 부여와 ⑥사법연수방식의 실질적 개편 등도 사법위를 통하여 구체적인 방안으로 마련할 계획임. 특히 구속영장실질심사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영장청구요건을 강화할 방침이고 판사가 피의자신문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며, 사법위의 상고제도 개선방침에 대하여는 현재 서울지검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불필요한 항소제한지침’을 전국 검찰에 확대 실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항소 및 상고를 최대한 줄여 법원의 재판업무경감에 협조하기로 함. 이와 함께 올해안에 피의자의 변호인선임 및 접견권 보장, 긴급구속영장 확대, 보고 등 각종 업무 간소화, 피의사실공표 등 대언론보도문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확정하여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며, 서울지검 북부지청이 오전중에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 석방판결을 받은 피의자들을 재판당일 일몰

시간에 석방하는 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전국 지검별로 확대실시할 방침임 (대검찰청).

- 법원이 없는 지역에서 운영되어 온 순회심판소 대신 세분화된 상설간이법원을 설치하여 소액사건, 화해·독촉사건 및 조정사건 등을 전담시키고 고등법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지방법원 소재지에 고등법원지부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함. 이와 함께 현재 각급 법원장의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법관회의를 의결기구화하는 방안을 모색중이고 사법시험성적과 연수원 성적 등 단순한 법률지식만으로 법관을 임용하는 현행 제도는 사회경험과 경륜, 성품 등을 검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연수원을 거친 뒤 5~10년동안 부판사로서 재판연구나 소액즉결사건을 맡긴 뒤 법관으로 임용하도록 할 방침임(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
- 우리나라법원의 문제점으로 심각한 수준의 법원내부의 관료화와 계급화로 재판의 본질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직급제도로 인하여 재판에서 상명하복의 부작용을 낳았고 법원에서 출세지향의 고질병이 고착화되었으므로, 현재의 직급제를 폐지하고 판사는 단일호봉제로 운용되어야 하며 판사와 대법관만이 공식명칭이 되게 하여야 할 것임. 또한 조세법원·행정법원 등 전문판사를 배치하는 전문법원을 설치하고 대법원도 이에 맞추어 전문부가 설치되어 각 부마다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인력충원방법은 법관 뿐 아니라 변호사중에서도 판사로 보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와 아울러 법관선발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이 아니므로 행정부·국회·변호사협회·법학교수회·판사 등이 참여하는 '법관선발위원회'를 조직하여 이에 일임하고 대법관의 충원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공정하게 선발해야 할 것임(정종섭 건국대교수,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주최 학술시민포럼 『사법부 개혁과 법률가 양성』, '사법부개혁과 법률가 양성', 1993.11.19).
- 최근 활동이 두드러진 단독판사의 경우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교육을 이수하면 판사로 임용되어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으므로 사법연수후 5년 이상의 사법보좌관을 거쳐 판사 등으로 임용하는 사법보좌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이상수 변호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주최 학술시민포럼 『사법부개혁과 법률가 양성』, 토론, 1993.11.19).

: 한국 93.10.18.,29면; 한겨레 93.10.14.,11면; 세계 93.10.19.,23면; 조

선 93.10.22.,30면; 한겨레 93.10.22.,2면; 경향 93.10.22.,1면; 경향 93.10.22.,22면; 세계 93.10.22.,22면; 서울 93.10.22.,1면; 서울 93.10.24.,19면; 세계 93.10.25.,3면; 경향 93.11.3.,23면; 국민 93.11.6.,17면; 동아 93.11.11.,4면; 한국 93.11.23.,29면; 세계 93.11.22.,9면; 동아 93.11.26.,3면; 서울 93.11.26.,22면; 국민 93.11.26.,18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74~75면)·제4호(42~43면)·제6호(103~104면)·제10호(101면)·제12호(109~110면) 참조

○ 성폭력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직장상하관계를 이용한 성적 접근과 희롱도 날로 증가추세이며, 최근 성범죄는 가해자의 지식 정도나 나이, 신분, 빈부를 불문하고 친고죄라는 독소조항과 사회통념을 교묘히 이용하여 폭넓고 은밀하게 저질러지고 있으므로, 친고죄와 고소시효(성폭력발생 6개월 이내)를 폐지하여야 할 것임. 또한 '법문이 외설스러워진다'는 논리로 성폭력의 범주를 법에 규정하는 것조차 꺼리고 있다는데, 엄연히 '외설'스러운 범죄가 만연해 있는데도 외설스럽기 때문에 그 범죄를 다룰 수 없다면 피해자는 어디에 가서 호소해야 할 것인지 의문이고, 성폭력범죄는 사회통념이 저지르는 사회적 범죄이므로 비뚤어진 사회적 통념을 깨려는 노력이 절실함(한겨레신문 사설).
- 낮은 신고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성폭력발생률 세계 3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이는 친고죄규정이 명백한 사회적 범죄인 성폭력을 묻어두고 방치함에 기인한 것이므로, 성폭력특별법제정에서는 반드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야 함은 물론 성폭력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정부지원과 관심이 이어져야 할 것임(최영애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추진위원회 위원장).
- 성희롱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현재 묵인·방치되고 있는 성희롱행위에 대한 법제정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이수연 한국여성민우회 간사, 서울대조교성희롱사건공동대책위원회 주최 『직장내 성희롱 실태와 대책』 토론회, 1993.12.7).

- 가부장적 문화구조, 여성의 성적 대상화, 날로 번창하는 성산업, 성이미지를 내세운 상품광고의 범람 등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성희롱이 일상문화로 정착되어 있는데, 성희롱에 대한 복종 거부가 고용상의 이익·불이익 등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용상의 성차별로 보아야 하므로 국회에 상정중인 성폭력특별법에 직장내 성희롱 관련조항을 삽입시키고 노동부의 직장내 성희롱 대책수립 및 시행, 기업과 노동조합 차원의 예방조치와 대책 마련 등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이영자 성심여대 교수, 서울대조교성희롱사건공동대책위원회 주최 『직장내 성희롱실태와 대책』 토론회, 1993.12.7).
 - 성희롱행위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법 앞의 평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형사법에 성희롱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스페인, 미국 등 서구 여러나라는 물론 일본도 이미 성희롱행위의 범죄성과 위법성을 인정하여 법적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배상청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이종걸 변호사, 서울대조교성희롱사건공동대책위원회 주최 『직장내 성희롱실태와 대책』 토론회, 1993.12.7).
- : 한겨레 93.10.30.,3면; 한국 93.11.1.,11면; 동아 93.11.11.,4면; 한겨레 93.12.9.,10면; 국민 93.11.23.,11면

○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헌법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라는 규정을 두어 사실상 집회 및 시위의 사전허가제를 전제하고 있으며, 5·16, 10월유신, 12·12 등 3대 헌정유린사태시 비상기구를 통하여 개악 또는 제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 1천 4백 67개 법률의 전반적 개폐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강수림 민주당의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의견

-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뢰죄는 수뢰금액에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뢰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의 수뢰금액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며 수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어 이 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직량감경을 하더라도 최소 5년 이상의 형을 받는 등 알선수재죄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다른 법체계 등을 고려하여 알선수재죄의 형량을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함(법무부).

: 서울 93.11.7.,19

○ 행형법 개정의견

- 재소자의 수형생활 과정에서 비인간적·비민주적인 요소를 척결하여 권위주의시대의 지나친 규제 일변도에서 재소자의 교화위주로 전환하기 위하여 '행형법개정연구반'의 연구를 통하여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에 대한 징벌 가운데 감식·운동정지·도서열독금지 등의 폐지와 수형자가 도주 또는 소란을 피울 경우 씌우는 계구 가운데 입을 막는 방성구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이번 기회에 「행형법」 69개 전조항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임(법무부).

: 국민 93.10.20.,1면; 한국 93.10.21.,21면

○ 형사소송법 개정의견

- 구속제도는 개인의 인권보장과 국가의 형법권실현이라는 두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는 ①체포제의 도입, ②구속통지제 규정, ③보석제도의 확대 등이 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함. 최근 법무부가 현행 긴급구속요건 중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로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은 영장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영장없는 불법구속을 남발할 우려가 있어 반대하며, 영장실질심사제는 영장주의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유지하고 구속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이재상 경희대학교수, 형사정책연구원주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 세미나, '구속제도의 개선방향', 1993.11.12).
- 형소법은 어디까지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므로 묵비권 고지가 지켜지지 않거나 변호권이 침해된 상태에서의 자백은 증거능력에서 배제할 것을 명문화 하여야 하며, 피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수사중인 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인제도를 인정할 것과 구속적부심사제도의 적용범위를 '구속된 피의자'에서 '체포·구금을 당한자'로 확대하여야 함(차용석 한양대

교수, 형사정책연구원주최 『형사소송법개정방향』 세미나, ‘형소법의 문제점과 개정의 기본방향’, 1993.11.12).

- 검사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기 위하여 준검사를 양성하여 교통사고·행정법규위반 등 경미한 사건을 전담하게 하고, 이와 함께 전화진술제를 도입하여 중요 참고인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전화를 통하여 진술을 받은 뒤 녹취서를 작성하면 이를 증거로 인정해주는 등 참고인 조사방식을 개선하여야 할 것임(정동욱 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 형사정책연구원주최 『형사소송법개정방향』 세미나, ‘수사·재판절차의 신속한 진행확보방안’, 1993.11.12).

: 경향 93.11.13., 22면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고소·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됨과 동시에 피고소·고발인이 무조건 형사입건되어 피의자신분으로 전락하는데에 따른 각종 사회적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앞으로 피고소·고발인을 피의자로 부르는 대신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으로 호칭하는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모든 피고소·고발인을 상대로 해 온 지문채취도 혐의가 인정된 기소대상자에 한하여만 채취하기로 함(법무부).

: 국민 93.11.9., 19면; 한겨레 93.11.19., 19면

Ⅱ. 최신법령 목록

(1993. 10. 11 ~ 1993. 12. 10)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법	틀 4581	군인보수법중개정법률	1993.12. 9
	4582	군무원인사법중개정법률	1993.12. 9
	4583	국방대학원설치법중개정법률	1993.12. 9
	4584	외자도입법중개정법률안	1993.12.10
	4585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1993.12.10
	458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1993.12.10
	4587	부정수표단속법중개정법률	1993.12.10
	4588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1993.12.10
	4589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중개정법률	1993.12.10
	45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1993.12.10
	4591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1993.12.10
	4592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	1993.12.10
	4593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	1993.12.10
	4594	특허법중개정법률	1993.12.10
	4595	의장법중개정법률	1993.12.10
	4596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	1993.12.10
	4597	상표법중개정법률	1993.12.10
	4598	하수도법중개정법률	1993.12.10
	4599	지하수법	1993.12.10
	4600	건설공제조합법중개정법률	1993.12.10
4601	특정다목적댐법중개정법률	1993.12.10	
조	약 1195	대한민국과몰타정부간의입국사증에관한상호면제에관한교환각서	1993.10.11
	1196	대한민국정부와리투아니아공화국정부간의무역협정	1993.11.23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1197	대한민국정부와리투아니아공화국정부간의투 자의상호증진및보호에관한협정	1993.11.23
1198	대한민국정부와자메이카정부간의사증면제에 관한협정	1993.11.11
1199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환경 협력에관한협정	1992.11.11
1200	대한민국정부와루마니아정부간의외교관및관용 여권에대한사증의상호면제에관한교환각서	1993.11.27
1201	대한민국정부와폴란드공화국정부간의사증면 제에관한교환각서	1993.12. 4
1202	대한민국정부와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공여에관한교환각서	1993.12. 6
대 통 령 령 13990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0.11
13991	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3.10.15
13992	원자력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0.18
13993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시행령	1993.10.18
13994	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0.18
13995	우편환법시행령폐지령	1993.10.18
13996	전파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0.18
13997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0.22
13998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3.10.26
13999	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0.30
14000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93.11. 6
14001	철도소운송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1. 6
1400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3.11. 6
14003	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1. 9
14004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1.13
14005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1.16
14006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93.11.19
14007	항만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1.19
14008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 정령	1993.11.20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14009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3.11.20
14010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1.20
14011	별정우체국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 1
14012	국가배상법시행령중개정령	1993.12. 2
14013	주민소득조사위원회규정폐지령	1993.12. 2
14014	공동주택관리령중개정령	1993.12. 2
14015	여성정책심의위원회규정중개정령	1993.12. 9
14016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3.12. 9
14017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93.12. 6
총 리 령 433	공무원특별훈련규칙중개정령	1993.10.11
434	원자력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0.18
435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0.27
436	통계법시행규칙	1993.11. 1
437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관한시조직설치규칙	1993.11.15
438	공무원평정규칙중개정령	1993.11.15
439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중개정령	1993.11.15
44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1.25
441	기상업무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2. 1
외 무 부 령 172	외무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3.11.29
내 무 부 령 594	내무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3.10.13
595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0.22
596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1. 9
597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3.11.11
59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1.20
재 무 부 령 194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3.10.18
1948	계약사무처리규칙중개정령	1993.10.20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1949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0.27
1950	국유재산법제55조의규정에의한청산절차의특 례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3.11.20
법 무 부 령 376	보호외국인의의류및침구의제식등에관한규칙	1993.11. 5
377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개 정령	1993.11. 9
378	검찰보존사무규칙중개정령	1993.12.10
문화체육부령 7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0.19
농림수산부령 1129	수산제조업의허가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3.10.18
상공자원부령 17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1993.11. 9
18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1.20
19	중소기업진흥법시행규칙중폐지령	1993.12.10
보건사회부령 918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1. 8
919	국민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1. 8
920	국립보건연구원연구비지급규칙폐지령	1993.12. 9
921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 칙중개정령	1993.12. 9
노 동 부 령 85	직업훈련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0. 9
86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1. 5
87	건설근로안전에관한한시조직설치규칙중개정령	1993.11.13
교 통 부 령 1012	자동차운수규칙중개정령	1993.10.26
1013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0.30
1014	철도소운송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1. 6
1015	자동차운송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 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3.11.15
1016	여객선운항관리규칙중개정령	1993.12. 4
1017	항만시설사용규칙중개정령	1993.12. 4
1018	철도청직원복제규칙중개정령	1993.12. 2
체 신 부 령 864	우편환법시행규칙	1993.10.18
865	전파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10.27
866	전기통신설비의기술수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3.11.13

국내입법의견조사(물류관리사제도의 도입)

제 13 호

1993年 12月 26日 印刷

1993年 12月 31日 發行

發行人 張 明 根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株) 韓國 컴퓨터 産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 화 : 722-2901/3, 722-0163/5

등록번호 : 1981. 8.11 제 1-190호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값 2,500원

국내입법의견조사 발간목록

호 수	도 서 명	면 수	발 행 일
제 1 호	뇌사 및 장기이식과 법률문제	72면	92. 7.29
제 2 호	간통죄의 존폐 및 낙태의 허용범위	68면	92. 8.31
제 3 호	환경문제 관련 입법의견	88면	92.10.29
제 4 호	성직자 과세논쟁	54면	92.11.30
제 5 호	남북통일을 위한 대처방안과 법적문제	74면	92.12.30
제 6 호	선물거래법 제정에 관한 입법의견	120면	93. 3.25
제 7 호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법제개선	80면	93. 4.30
제 8 호	농지제도의 법적 정비	130면	93. 6.30
제 9 호	정치관계법제의 개선방향	118면	93. 8.20
제10호	상품권의 법적 규제	112면	93. 8.31
제11호	묘지제도의 법적 개선	112면	93.10.20
제12호	과학기술혁신과 법제개선	116면	93.11.15
제13호	물류관리사제도의 도입	114면	93.12.31

- 안 내 -

「국내입법의견자료회원」에 가입하시는 분에게는 현안쟁점에 관한 각계 각층의 입법의견을 수집·정리 및 분석한 「국내입법의견조사」보고서를 제공합니다.

- 연간회비 : 10,600원
- 가입방법 : 은행 온라인 계좌 이용 회비불입
 국민은행 계좌번호 009-25-0002-616
 예 금 주 한국법제연구원
- 연락처 TEL 722-2901~5
 FAX 722-2900